파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시 보

제1672호

2018년 12월 28일 (금)

차 례

조 례

○ 파주시 조례 제1459호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파주시 조례 제1460호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4

○ 파주시 조례 제1461호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7

○ 파주시 조례 제1462호 파주시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

○ 파주시 조례 제1463호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24

○ 파주시 조례 제1464호 파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28

○ 파주시 조례 제1465호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35

○ 파주시 조례 제1466호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 49

○ 파주시 조례 제1467호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54

○ 파주시 조례 제1468호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 58

○ 파주시 조례 제1469호 파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조례 ····· 64

○ 파주시 조례 제1470호 파주시 생활임금 조례 ····· 68

○ 파주시 조례 제1471호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 71

○ 파주시 조례 제1472호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 ····· 84

○ 파주시 조례 제1473호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89

○ 파주시 조례 제1474호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 92

○ 파주시 조례 제1475호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98

○ 파주시 조례 제1476호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101

○ 파주시 조례 제1477호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 ····· 116

○ 파주시 조례 제1478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121

차 례

규 칙

○ 파주시 규칙 제646호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27

○ 파주시 규칙 제647호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31

○ 파주시 규칙 제648호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46

○ 파주시 규칙 제649호 파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 153

○ 파주시 규칙 제650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59

훈 령

○ 파주시 훈령 제247호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 161

○ 파주시 훈령 제248호 파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 …… 163

입법예고

○ 파주시 공고 제2018-1758호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191

고 시

○ 파주시 고시 제2018-264호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고시 …· 194

○ 파주시 고시 제2018-265호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및 1차 수정예산 고시 ·· 207

○ 파주시 고시 제2018-266호 도로명주소 고시 …… 227

○ 파주시 고시 제2018-268호 도로구간 변경고시 …… 228

공 고

○ 파주시 공고 제2018-1760호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 229

회람									

발 행 : 파 주 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및 2018년 제17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최 종 환 ㊞

2018년　12월　28일

파주시 조례 제 1459 호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철도교통과 ☎ 940-5771
입안자	철도교통과장	피 영 일
	교통정책팀장	이 치 선
	담 당 자	임 소 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

(안 제2조의2 신설)

제20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및 2018년 제17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최 종 환 ㊞

2018년　12월　28일

파주시 조례 제 1460 호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존속기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도시경관과 ☏ 940-4783
입안자	도시경관과장	김 진 우
	주차정책팀장	이 상 훈
	담 당 자	손 효 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

(안 제4조 신설)

제20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및 2018년 제17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최 종 환 ㊞

2018년　12월　28일

파주시 조례 제 1461 호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시장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지방자치법」제94조와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시장으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당선인을 보좌하고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또는 다른 명칭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정 현안사항 및 조직·기능·예산 현황의 파악
2. 새로운 시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시장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이후 설치할 수 있으며,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당선인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제4조제3항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또는 사무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선인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위원 등의 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제8조(위원회 예산 지원 등) ① 위원회의 존속기한 동안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사무직원과 자문위원에게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① 시장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사무실 및 비품 등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파주시 산하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명세 등의 내역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20일 이내에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시장은 위원회 활동 결과내역을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재·보궐 선거 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 ①「공직선거법」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과 같은 법 제195조 및 제200조에 따라 재·보궐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은 임기 시작 후 30일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기획예산과 ☎ 940-4051
입안자	기획예산과	이 종 춘
	기 획 팀 장	이 명 희
	담 당 자	유 정 현

□ 제정이유

○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시장직의 원활한 인수를 통해 시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안 제3조)

○ 인수위원회 설치·구성·운영 (안 제4조 ~ 안 제7조)

○ 인수위원회 예산 지원 및 활동 협조 (안 제8조 ~ 안 제9조)

○ 재·보궐 선거 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 (안 제12조)

제20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및 2018년 제17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최 종 환 ㊞

2018년　12월　28일

파주시 조례 제 1462 호

파주시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

파주시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파주시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2조 규정에 따라서”를 “「물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라”로 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2조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나목 중 “시설재투자적립금”을 “시설개선충당금”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시설재투자적립금의 부담)”을 “(시설개선충당금의 부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설재투자적립금”을 “시설개선충당금”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시설재투자적립금의 사용)”을 “(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시설재투자적립금”을 각각 “시설개선충당금”으로 한다.
제2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시설재투자적립금”을 “시설개선충당금”으로 한다.
제27조 제목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금”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환경시설과 ☏ 940-4462
입안자	환 경 시 설 과 장	김 관 진
	수 질 환 경 팀 장	이 화 연
	담 당 자	김 보 령

[별지 제1호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신청서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업 종		주 생 산 품	
	착 공 예 정 일		준 공 예정일	
	건물면적(동별)		부 지 면 적	㎡

승인 신청 사항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파 주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1. 건축물관리대장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1부.
6.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및 산출근거 1부.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별지 제2호서식]

승 인 번 호 제 호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파 주 시 장

구비서류
1.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2.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3.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4.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5.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6.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별지 제4호서식]

승 인 번 호 제 호	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별지 제5호서식]

승 인 번 호 제 호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6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파 주 시 장 귀 하

승 인 번 호 제 호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6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파 주 시 장 귀 하

[별지 제6호서식]

배수설비 사용개시 (중지) 신고서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배수설비 사용 개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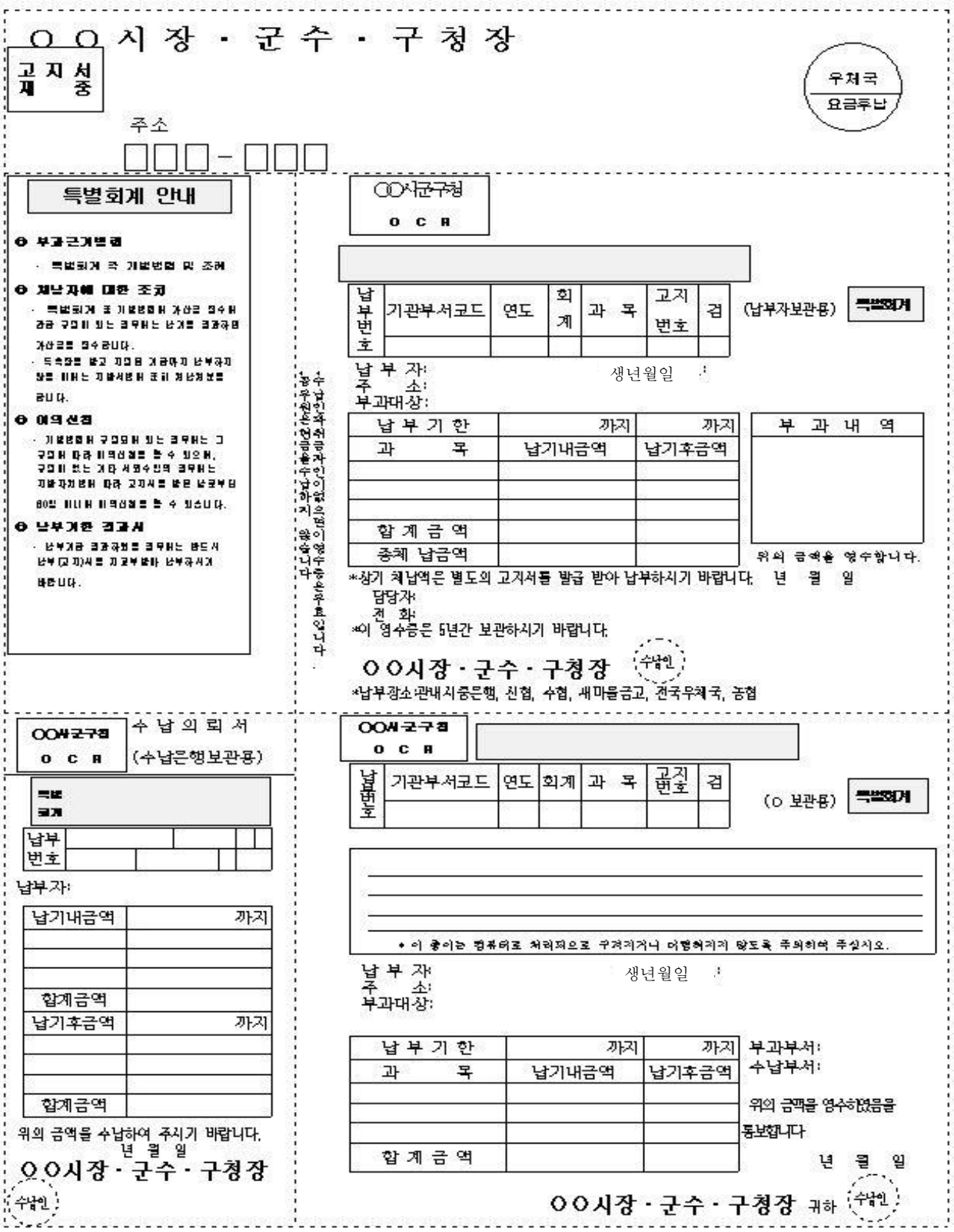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파 주 시 장 귀 하

[별지 제7호서식]



ㅇㅇ시장·군수·구청장

고지서 재중

우체국 요금후납

주소

□□□-□□□

특별회계 안내

❶ 부과근거법령

· 특별회계 각 기본법령 및 조례

❷ 체납자에 대한 조치

· 특별회계 각 기본법령에 따라 징수위탁 구의회 또는 금융기관은 납기를 경과하여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기본세법에 따라 재산압류 등을 합니다.

❸ 이의신청

· 기본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기본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❹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산금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ㅇㅇ시군구청 OCR

납부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목	고지번호	검

(납부자보관용) 특별회계

납부자:
주소:
부과대상:
생년월일 :

납부기한	까지	까지
과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합계금액		
총체납금액		

부과내역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ㅇㅇ시장·군수·구청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

수납인과취급자인이없으면이영수증은무효입니다

ㅇㅇ시군구청 OCR

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

특별회계

납부번호				

납부자:

납기내금액	까지
합계금액	
납기후금액	까지
합계금액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ㅇㅇ시장·군수·구청장

(수납인)

ㅇㅇ시군구청 OCR

납부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목	고지번호	검

(ㅇ 보관용) 특별회계

* 이 용지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납부자:
주소:
부과대상:
생년월일 :

납부기한	까지	까지
과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합계금액		

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ㅇㅇ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납인)

[별지 제8호서식]

징수유예 (분할납부) 신청서

<table>
<tr><td rowspan="3">신
고
인</td><td>상호 또는 명칭</td><td colspan="4"></td></tr>
<tr><td>성명(대표자)</td><td colspan="2"></td><td>생 년 월 일</td><td></td></tr>
<tr><td>사업장 소재지</td><td colspan="2"></td><td>전 화 번 호</td><td></td></tr>
<tr><td colspan="3">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td><td colspan="3" rowspan="2">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td></tr>
<tr><td rowspan="2">부담금의 종류</td><td rowspan="2">년
월분</td><td colspan="2">금 액</td></tr>
<tr><td>부담금</td><td>가산금</td><td>금 액</td><td>기 간</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6">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td></tr>
</table>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파 주 시 장 귀 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설치한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 물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라 -------- 공공폐수처리시설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공공폐수처리시설 ----------
제3조(정의) (생 략) 1. “사업시행자”라 함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관리하는 파주시장을 말한다. 2. “사업소장”이라 함은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업무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처리시설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3. ~ 5. (생 략) 6. (생 략) 가. (생 략) 나. 유지관리비로 운영관리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 7. (생 략)	**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 2. ---------- 공공폐수처리시설 ---------- ----------. 3. ~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 시설개선충당금 7. (현행과 같음)
제18조(시설재투자적립금의 부담) 유지	**제18조(시설개선충당금의 부담)** ------

현 행	개 정 안
관리비 중 시설재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시설재투자적립금”이라 한다)을 규칙에서 정한 산출기준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시설개선충당금”---------- ----------.
제19조(시설재투자적립금의 사용) ① 시설재투자적립금은 처리시설의 보완·개선 장비의 교체·고정자산의 구입·신장비 또는 신기기의 구입 등 처리효율 향상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설재투자적립금의 부과 및 적립금의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 ① 시설개선충당금은 ---------- ----------. ② 시설개선충당금의 ---------- --------.
제2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 ④ (생략) <신 설>	**제2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세입금의 사용) ① (생 략) ② 시설재투자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23조(세입금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설개선충당금 ----------. 1. ~ 4. (현행과 같음)
제27조(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규칙에 따라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27조(가산금)** ---------- ---- 가산금----------.

□ 개정이유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중가산금 규정을 폐지하여 시민불편을 개선하고,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명 변경

-「파주시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로 변경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되어 관련 조항 및 용어 정비

- 폐수종말처리시설 → 공공폐수처리시설
- 시설재투자적립금 → 시설개선충당금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안 제22조제5항 신설)

○ 중가산금 부과 내용 삭제(안 제27조)

제20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및 2018년 제17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최 종 환 ㊞

2018년　12월　28일

파주시 조례 제 1463 호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을 “다음과 같이”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체납요금 × 100분의 3 × 12개월 × 연체일수/365
2.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 체납요금의 100분의 3

제43조제1항제10호 중 “태만이”를 “태만히”로 한다.

제49조 중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를 “연체금, 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부과분(2018년 12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소관 부서		상수도과 ☎940-5882
입안자	상수도과장	김 찬 호
	수도요금팀장	조 우 현
	담 당 자	임 근 영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제36조(연체금) ----------

현 행	개 정 안
요금을 납기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이 ----------.
<신 설>	1.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체납요금 × 100분의 3 × 12개월 × 연체일수/365
<신 설>	2.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 체납요금의 100분의 3
제43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제43조(정수처분)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이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0. ---------- 태만히 ----------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9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단서 신설>	제49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 연체금, 수수료----------. 다만, 과태료에 대한 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 개정이유

○ 수도요금 연체금이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비율(3%)로 부과되는 방식을 연체기간만큼 부담하는 일할산정 방식으로 개선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권리 침해 해소 및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수도요금 연체금 일할산정 방식 도입(안 제36조)

○ 과태료 징수의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우선하도록 근거조항 추가 (안 제49조)

제20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및 2018년 제17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최 종 환 ㊞

2018년　12월　28일

파주시 조례 제 1464 호

파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파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
   가. 국·도비 보조금
   나. 파주시 일반회계 전입금
   다.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라.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및 기타 수입금
2. 세출
   가. 법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
   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반환금 및 기타 지출 비용

제4조제1항(종전의 제3조) 중 “의료보호업무담당과장”을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의료보호업무담당주사”를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제2항(종전의 제3조)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를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이 수행하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종전의 제5조) 중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을 “기금운용관은 제3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수입금을 받으려면”으로 하고, “조사결정하여”를 “조사·결정하여” 로 한다.

제6조제2항(종전의 제5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서식과 같다.

제6조제3항(종전의 제5조) 중 “수납한”을 “받은”으로 하고, “교부하고”를 “내주고,” 로 하며, “영수보고서”를 “영수필통지서”로 한다.

제7조제1항, 제2항(종전의 제6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운용관은 제3조제2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출납원은 파주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조, 제8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8조(종전의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복지지원과 (☏ 940-4380)
입안자	복지지원과장	이 기 용
	생활보장팀장	최 선 희
	담 당 자	채 진 선

〔별지 제1호서식〕

원 부 / 납입통지서 / 영수필통지서 / 영 수 증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의료급여기금				의료급여기금				의료급여기금				의료급여기금			
상환금 내용	대지급금	상환액	미납액	상환금 내용	대지급금	상환액	미납액	상환금 내용	대지급금	상환액	미납액	상환금 내용	대지급금	상환액	미납액
	액	액	액		액	액	액		액	액	액		액	액	액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	금 원			납입금액	금 원			납입금액	금 원			납입금액	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파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이 조례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 가. 국 · 도비 보조금 나. 파주시 일반회계 전입금 다.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라.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및 기타 수입금 2. 세출 가. 법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 나. 국 · 도비 보조금 반환금 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반환금 및 기타 지출 비용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의 의한 기금운용관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은 의료보호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보호업무담당주사으로 한다.	-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 -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를 전부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 ---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이 수행하는 ---------- ---------- ----------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생 략)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현행과 같음)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은 제3조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수입금을 받으려면----- 조사 · 결정하여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 받은 ---------- ------- 내주고 ----------영수필통지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제3조제2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출납원은 파주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① 기금운용관은	<삭 제>

대불금이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서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의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하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삭 제>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준용)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개정이유

○ 기금설치 주체 및 운용범위 등 세입·세출의 구체화와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명 변경

-「파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파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 인용 법령 및 목적 변경(안 제1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 의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으로 인용 법령 및 목적 변경

○ 존속기한 명시(안 제2조)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 명시

○ 세입·세출 내용 구체화(안 제3조)

- 조문형식을 세분화하여 세입과 세출내용을 구체화시킴

○ 상위법과 중복된 조항 삭제(현행 제7조, 8조, 별지 제2호서식)

○ 그 밖에 상위법률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7조 등)

제20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및 2018년 제19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최 종 환 ㊞

2018년　12월　28일

파주시 조례 제 1465 호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2조 중 “합류식 하수관거지역은 수계별, 분류식 하수관거 지역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해야 한다.”를 “합류식하수관로 설치 지역은 수계별(하천별), 분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은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하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를 삽입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차집관로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로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로의 준설
2. 차집관로를 제외한 하수관로 및 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 등 그 밖에 공작물의 설치·개축·확장·수선 및 유지관리

제4조의 제목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을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부담)”으로 한다.

제5조 앞에 “제3장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삽입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제7조의 제목 “(하수관거 준설 등)”을 “(하수관로 준설 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의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하며, “하수관로상태를”을 “하수관로 상태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13조 앞에 “제4장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및 관리 등”을 삽입한다.

제16조 앞에 “제5장 사용료·점용료·수수료·부담금”을 삽입한다.

제16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하고 “공공하수관거까지”를 “공공하수관로까지”로 “공공하수관거의”를 “공공하수관로의”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수도 설치 사용자”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설치 사용자”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하수도 사용에 관하여 특별히 감면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제25조제2항 “제1항에”를 “제1항제1호에”로 한다.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점용료·수수료·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가산금 및 독촉)”을 “(가산금 및 독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다음 각 호의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체납요금 × 100분의 3 × 12개월 × 연체일 수 / 365를 적용
2.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 체납요금의 100분의 3을 적용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과태료 등의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8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삽입한다.

별표 제1호, 별표 제2호, 별표 제5호, 별표 제6호, 및 별지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부과분(2018년 12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소관 실·과·소		하수도과 ☏ 940-5530
입 안 자	하수도과장	한 광 우
	하수행정팀장	조 윤 옥
	담 당 자	황 지 원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제16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가. 하수도 사용업종은 파주시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나.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사용업종을 적용한다.

다.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 업종	사용 구분 (㎥/월)	단가 (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분류식	합류식	분류식	합류식	분류식	합류식	분류식	합류식
가정용	0-20	550	430	650	510	750	590	850	670
	21-30	750	570	890	680	1,030	790	1,170	900
	31이상	1,140	860	1,350	1,020	1,560	1,180	1,770	1,340
일반용	0-50	890	670	1,090	820	1,290	970	1,490	1,120
	51-100	1,130	780	1,390	960	1,650	1,140	1,910	1,320
	101-300	1,230	850	1,510	1,050	1,790	1,250	2,070	1,450
	301이상	1,360	1,060	1,670	1,310	1,980	1,560	2,290	1,810
대중목욕탕용	0-500	710	540	840	640	970	740	1,100	840
	501-1000	970	760	1,150	900	1,330	1,040	1,510	1,180
	1001-2000	1,130	900	1,340	1,070	1,550	1,240	1,760	1,410
	2001이상	1,250	980	1,480	1,160	1,710	1,340	1,940	1,520

* 분류식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역중 분류식 하수관로 사용지역(마을하수도 포함)

* 합류식 지역: 사용공고 된 하수처리구역 중 「분류식 지역」 외 지역

[별표 2]

수질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제16조제3항 관련)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 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영 제22조제3항제1호)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 $\frac{1}{1000}$(kg/g) × 1일 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제21조제1항 및 제23조 제2항 관련)

○ 세제곱미터당 원인자 부담금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 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

▻ $A = \left(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100}\right)^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로(간선관로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파주시에 둘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그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사용량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를 산정한다.

[별표 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제24조제1항 관련)

1. 수거식화장실

부과기준	수 수 료		
	수집·운반	처리	계
10리터	130원	20원	150원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구 분	수 수 료		
	수집·운반	처리	계
기본요금 (750리터까지)	17,300원	1,500원	18,800원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1,340원	200원	1,540원

※ 비고

1.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 수수료를 말함
2.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별지]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제14조제1항 관련)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시　　읍·면·동　　번지(　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등			
	관 경	ø　㎜	연장	m	접속 방법	(하수관, 맨홀, 타 배수설비 등)에 접속
	배출수량	㎥/일	※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			
배수설비 기부채납 여·부		파주시에 기부체납 (토지 경계부터 공공하수도까지)			○ , ×
		기부체납 시 법 제27조제6항 및「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시에서 유지·관리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검사일자 (. .)	보완 사항	2차 검사 검사일자 (. .)	비고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다른 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 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5. 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다른 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				
	7. 그 밖의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기록				

「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4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수수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생 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류식 하수관거지역은 수계별, 분류식 하수관거지역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해야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 ----------합류식 하수관로 설치지역은 수계별(하천별),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지역은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해야 한다.
<신 설>	**제2장 하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 ---------- ---------- ---------- ----------.
1.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거의 준설	1.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차집관로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로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로의 준설
2. 차집관거를 제외한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 등 그 밖에 공작물의 설치·개축·확장·수선 및 유지관리	2. 차집관로를 제외한 하수관로 및 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 등 그 밖에 공작물의 설치·개축·확장·수선 및 유지관리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 배분) (생 략)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 부담)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장 공공하수도의 사용**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생 략)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1. ~ 3. (생 략)	②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제7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 하수관로의 ---------- ---------- 하수관로 상태를----------.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해야 한다.	② 하수관로---------- ---------- ---------- ---------- ----------.
<신 설>	**제4장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및 관리 등**
제13조 ~ 제15조 (생 략)	제13조 ~ 제15조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장 사용료·점용료·수수료·부담금**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 ② (생 략)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물환경보전법」 ---------- ---------- ---------- ---------- ----------.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③ (생 략)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④ ---------- ---------- ----------. --- ----- 「물환경보전법」 ---------- ---------- ---------- ----------.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 ---------- ---------- ---------- ---------- 하수관로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필요한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③ ------- 하수관로 ---------- ---------- 공공하수관로까지 ---------- 하수관로 ------ ----------, --- 공공하수관로의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감면 등) ① ---------- ---------- ---------- ---.
1. 중수도 설치 사용자: 그 사용량에 해당하는 하수도요금의 30퍼센트	1.「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설치 사용자: ----------
2. ~ 7 (생 략)	2.~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하수도 사용에 관하여 특별히 감면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하수도요금의 감면기간은 재이용수·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1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 ---------- ---------- ---------- ---------- ----------.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점용료·수수료·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6조(이의신청) ① (생 략)	제26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② ---------- ----------「지방세기본법」을 ------.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 (생 략)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다음 각 호의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체납요금 × 100분의 3 × 12개월 × 연체일 수 / 365를 적용 2.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 체납요금의 100분의 3을 적용
	④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 설>	**제6장 보칙**
제28조(권한의 위임) (생 략)	제28조(권한의 위임) (현행과 같음)
제29조(규칙) (생 략)	제29조(규칙) (현행과 같음)

□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하수도법」,「물환경보전법」등 관련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불명확하고 비합리적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이용편의를 위해 장으로 구분. (제1장~제6장)

○「하수도법」인용 조문을 법률에 맞게 개정.
(안 제2조~제3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23조)

○ 법률명칭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 (안 제16조, 안 제19조, 안 제2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물환경보전법」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반영한 감면조항 개정
(안 제25조제1항)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안 제27조)

- 가산금 산정방식을 고정요율에서 일할 산정방식으로 개선

- 독촉 및 체납처분의 근거 정비

○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개정 (안 제24조 제1항 별표6)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문구 등의 정비 (안 제4조)

제20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및 2018년 제17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최 종 환 ㊞

2018년　12월　28일

파주시 조례 제 1466 호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까지로 하고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파주시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파주시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지역 내 관광 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 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제10조(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관광과 ☏ 940-8516
입안자	관 광 과 장	최 영 목
	관광마케팅팀장	임 혜 정
	담 당 자	심 윤 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파주시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파주시관광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지역 내 관광 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 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신 설>	제10조(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관광업무 위탁) (생 략)	제11조(관광업무 위탁) (현행과 같음)
제10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생 략)	제12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준용) (생 략)	제13조(준용) (현행과 같음)
제12조(시행규칙) (생 략)	제14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 개정이유

○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기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관광발전 여건을 확립하며, 지역 관광진흥을 위하여 현실적인 관광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골자

○「관광진흥법」제48조의9에 따라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기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안 제9조)

○ 지역관광협의회의 운영 기준을 규정함(안 제10조)

제20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및 2018년 제18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최 종 환 ㊞

2018년　12월　28일

파주시 조례 제 1467 호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3. 종전 운용 중인 기금의 폐지로 발생한 재원 등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 세입 중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하 “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을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파주시의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정안정화기금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재정안정화기금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기획예산과 ☎ 940-4061
입안자	기획예산과장	이 종 춘
	예 산 팀 장	김 은 숙
	담 당 자	김 진 욱

□ 제정이유

○ 경제는 호경기와 불경기 순환을 반복하며, 조세(국세+지방세) 수입 또한 경기 변동에 따라 연도 간 불균형이 발생함.

○ 연도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의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수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사용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목적 및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안 제1조～제2조)

○ 기금의 조성 및 용도 (안 제3조～제4조)

○ 기금의 관리·운용 (안 제5조)

○ 기금의 운용심의(안 제6조)

○ 기금의 회계공무원 지정(안 제7조)

○ 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안 제9조)

제20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및 2018년 제18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최 종 환 ㊞

2018년　12월　28일

파주시 조례 제 1468 호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이하 ” 부설 주차장 “이라 한다)의” 를 “주차장의” 로 하고 “징수등에” 를 “징수 등에” 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장은 청사 내 주차불편 해소를 위하여 그 부설주차장에” 를 “파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 이라 한다)에” 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주차요금의 면제) 시장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같은 조 제1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10호,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파주시 소속 관용 차량
5.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성실납세증 교부일로부터 1년간)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그 증서를 소지한 자가운전차량
7. 파주시청 주차장에 입차 후 60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
10.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의 자가운전차량
11.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탑승차량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경)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경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같은 조 제2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기량 800cc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를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같은 조 제5호,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6.「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

제5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부설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을 단체,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경우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회 계 과 ☏940-5903
입안자	회 계 과 장	박 석 문
	청사관리팀장	임 기 석
	담 당 자	조 상 영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징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① ---------- 주차장의---------- 징수 등에 ----------.
제2조(주차요금) ① 시장은 청사 내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하여 그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별표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조(주차요금)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부설주차장”이라 한다)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주차요금의 징수대상) 시장은 당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제3조(주차요금의 면제) 시장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시 소속 관용 차량	1. 파주시 소속 관용 차량
2. ~ 4.(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성실납세증 교부일로부터 1년간)	5.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성실납세증 교부일로부터 1년간)
6.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가운전차량	6.「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그 증서를 소지한 자가운전차량
7. 시청 주차장에 입차후 60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	7. 파주시청 주차장에 입차 후 60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
8. ~ 9.(생 략)	8. ~ 9. (현행과 같음)
	10.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의 자가운전차량

현 행	개 정 안
	11.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탑승차량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당해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 사항이 2 이상일 경우 1가지만 감면한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경)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 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경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기량 800cc미만의 경형 자동차	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3.「공직선거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3. ----------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
4.(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신 설>	6.「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
제5조(주차거부) 시장은 주차장 관리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제5조(주차거부)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5. 기타 주차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 그 밖에 ----------
제7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6조에 따라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부설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경우「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개정이유

○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시민편익을 증진하고 부설주차장 위탁운영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관련법령 개정 등에 따라 부설주차요금 면제대상 추가(안 제3조)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운전 차량
-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 탑승차량

○ 관련법령 개정 등에 따라 부설주차요금 감경대상 추가(안 제4조)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기량 삭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부설주자장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 7조)

제20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및 2018년 제18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최 종 환 ㊞

2018년　12월　28일

파주시 조례　제 1469 호

파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파주시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예산 지원 및 준용)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파주시는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협의회 사무실을 우선적으로 시청 본관에 둘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7조(포상) 시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평화협력과 ☏ 940-5502
입 안 자	남북협력팀장	서 병 권
	통일기반조성팀장	이 이 구
	담 당 자	조 정 호

□ 제정이유

○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의 업무지원 및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대행기관의 운영·사무처리 등(안 제3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 업무지원 범위(안 제4조 ~ 제6조)

○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규정(안 제7조)

제20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및 2018년 제18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생활임금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최 종 환 ㊞

2018년　12월　28일

파주시 조례 제 1470 호

파주시 생활임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을 통하여 파주시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3.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적용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노동자
2. 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제5조(생활임금의 산정기준) 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물가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

동의 정도, 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생활임금은 시간급으로 표시한다.

제6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파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한다.

② 협의회가 기간 내에 생활임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③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특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생활임금은 2019년 6월 30일까지 결정·고시하며, 적용시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기업지원과 ☎ 940-5268
입안자	기업지원과장	한 경 준
	노사협력팀장	한 성 희
	담 당 자	김 근 수

□ 제정이유

○ 파주시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생활임금의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6조)

제20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및 2018년 제18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최 종 환 ㊞

2018년　12월　28일

파주시 조례 제 1471 호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등에 따라 파주시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파주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으로 한다)이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시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할구역 내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말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시설·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6조(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학습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평생교육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

가. 시장

나. 평생교육업무담당국장

다. 파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파주시의회 의원 1명

나.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의 장

다.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라.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임기 및 해촉) ① 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평생교육기관에 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실무적 기능을 보완하고 평생교육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파주시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고, 어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로 구성하며, 간사는 평생학습팀장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 기능을 갖는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보 교환

2. 평생교육 네트워크화사업 추진
3. 그 밖의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항

제14조(협의회 수당)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제15조(설치)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은 시 관할 구역 내에 둔다.

③ 시장은 읍·면·동별로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학습 정책개발·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육성 보급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지역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4. 평생교육 상담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5. 평생교육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6.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7.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
8. 소외 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9. 평생교육 통계 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 개발
10. 시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행사개최 및 지원
11.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②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인력은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평생교육사의 배치) 시장은 평생학습관에 법 제26조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교육 등을 수강하거나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별표에 해당하는 수강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사용료를 사용일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면제·반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교육 수강료의 경우에는 기수별 수강생 1명당 1과목에 한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수강료의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수강료의 반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할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전액
2. 시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전액
3. 사용자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취소한 경우

가. 3일 전까지 : 전액

나. 2일 이전 :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제4장 보칙

제2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관련 경비가 목적 외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2조(포상 등)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단체·시설 및 개인을 발굴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 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강료 및 사용료 면제·반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수강신청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소관 부서		평생학습과 ☏ 940-5923
입 안 자	평 생 학 습 과 장	박 노 정
	평 생 학 습 팀 장 교 육 운 영 팀 장	정 영 옥 이 형 숙
	담 당 자	이 선 주 박 재 훈

[별표]

수강료 및 사용료(제19조 관련)

1. 교육생 수강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기술교육과정	1명 1개월	15,000원 ~ 20,000원	가. 실습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나. 교육기간이 10일 이상일 때에는 1개월로 본다.
취미교육과정	1명 1개월	15,000원 ~ 20,000원	
교양교육과정	1명 1개월	15,000원 ~ 20,000원	
특별강좌과정	1명 1개월	15,000원 ~ 30,000원	

2. 기본시설 사용료

구분 / 시설명	기 준	금 액	비고
대강당	오전(08시-12시)	50,000원	가. 초과 사용료의 가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30분 미만: 사용료의 20퍼센트 2)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사용료의 50퍼센트 3) 1시간 이상: 사용료의 100퍼센트 나. 사용일이 토요일인 경우 기준금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오후(13시-18시)	60,000원	
	야간(18시-22시)	70,000원	
	1일	100,000원	
강의실	4시간	20,000원	

3.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음향기기사용		1회 2시간	20,000원	가. 매시간 초과 시마다 해당 기준금액의 20퍼센트 초과요율만 추가 징수한다.
피 아 노		1회 2시간	20,000원	
영 사 기		1회 2시간	20,000원	
조명	일반	1회 2시간	10,000원	
	종합	1회 2시간	15,000원	

4. 냉·난방 사용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대 강 당	1회 (2시간)	50,000원	가. 매시간 초과 시마다 해당 기준금액의 20퍼센트 초과요율만 추가 징수한다.
강 의 실	1회 (2시간)	10,000원	

주요사항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임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구역 내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관할구역 내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평생교육업무담당국장과 파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의원, 평생교육기관의 장, 대학교수, 평생교육전문가, 주민자치위원장 2.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평생교육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 가. 시장 나. 평생교육업무담당국장 다. 파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파주시의회 의원 1명 나.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의 장 다.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라.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6조(평생학습관 설치)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	제15조(설치)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학

영,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파주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신 설> <신 설>	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파주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은 시 관할 구역 내에 둔다. ③ 시장은 읍·면·동별로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평생학습관 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학습 정책개발·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육성 보급 2. 지역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3. 평생교육 상담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4. 평생교육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5.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전문강사 인력풀「강사은행제」및 체계적 학습고취를 위한「학습계좌제」운영 7.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 8. 평생교육 통계 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 개발 9. 시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10.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학습 정책개발·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육성 보급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지역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4. 평생교육 상담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5. 평생교육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6.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7.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 8. 소외 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9. 평생교육 통계 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 개발 10. 시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11.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수강료 징수 등) ①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	제19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교육 등을 수강하거나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별표에 해당하는 수강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리적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 강좌운영 활성화와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 교육문화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 등을 수강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해당 사용료 및 수강료를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사용료를 사용일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교육 수강료의 경우에는 기수별 1명마다 1과목에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6.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등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제20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면제·반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교육 수강료의 경우에는 기수별 수강생 1명당 1과목에 한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수강료의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수강료의 반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을 취소할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

따라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전액 2. 시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전액 3. 사용자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취소한 경우 가. 3일 전까지 : 전액 나. 2일 이전 :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평생교육법」개정사항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파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와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를 통·폐합하여 파주시 평생교육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상위법령「평생교육법」개정사항 반영

-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 (안 제8조제3항)
- 평생학습관의 기능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명시(안 제16조 제2항)
- 읍·면·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안 제15조제3항)

○ '교육문화회관'을 '파주시 평생학습관'으로 명칭 변경 및 기능 전환 (안 제15조, 제16조)

-「파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와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를 통·폐합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및 수강에 따른 비용 징수 및 면제, 반환 규정 등에 대하여 신설(안 제19조, 제20조)

제20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및 2018년 제18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최 종 환 ㊞

2018년　12월　28일

파주시 조례 제 1472 호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폐지되는 파주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세입에 이입한다.

소관 부서		도시개발과 ☏ 940-4713
입 안 자	도시개발과장	신 정 하
	시설지구팀장	전 재 식
	담 당 자	박 종 욱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6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파주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5.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8.「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 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익금 및 기타수익금 10. 차입금	<삭 제>
제10조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는 다음 각	<삭 제>

현 행	개 정 안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특별회계의 조성·운영 관리보조를 위한 사무보조원의 일용인부임비 3. 도시개발사업의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비 ②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81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81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도시개발 채권의 원리금 상환 ⑤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⑥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심의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상임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성(性)비율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도시계획 전문가 2. 파주시의회 의원 3. 업무 관련 국장, 담당관, 과장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회계의 운용 2.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기간, 융자이율, 융자규모, 융자계획등 3. 제12조 제2항의 용도외 사용여부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심의로 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개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⑩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수당·여비 지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융자조건) ① 융자조건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은 그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연체금리의 수준을 감안하여 산정한 지연 손해금을 납입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사항은 시장과 도시개발특별회계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체결한 융자 약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988년과 1998년에 시행·준공 된 금촌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청산금의 세입·세출을 위해 설치 운용하였으나,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도시개발사업이 없는 상황으로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항(안 제8조～제12조) 삭제

○ 도시개발특별회계 잉여금의 일반회계 귀속

제20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및 2018년 제18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최 종 환 ㊞

2018년 12월 28일

파주시 조례 제 1473 호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과'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사무부서'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도시개발과 ☏ 940-4713
입 안 자	도시개발과장	신 정 하
	시설지구팀장	전 재 식
	담 당 자	박 종 욱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생 략)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신 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사무부서----------. 제2조의2(존속기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개정이유

○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조직개편 및 부서명 변경 시 특별회계 관리부서명을 변경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사무 담당부서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관리부서 명칭 변경(안 제2조제1항)

-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사무부서에서 총괄 관리

○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조항 신설(안 제2조의2)

-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설정

제20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및 2018년 제18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최 종 환 ㊞

2018년　12월　28일

파주시 조례 제 1474 호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 결정)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파주시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한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시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 기준) 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5. 그 밖에 파주시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파주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

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이장·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10조(지급방법) 시장은 제8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1조(환수) 시장은 제8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이 제4조 및 제7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재원의 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소 관 부 서		나. 안전총괄과 ☎ 940-4691
입안자	다. 안전총괄과장	라. 성 삼 수
	마. 사회재난예방팀장	바. 문 강 춘
	사. 담 당 자	아. 김 덕 인

□ 제정이유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피해 수습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적용범위(안 제2조)

○ 사회재난 구호 및 지원 결정(안 제3조)

○ 사회재난 구호 및 지원 기준(안 제4조)

○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안 제5조 ~ 제6조)

제20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및 2018년 제18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최 종 환 ㊞

2018년　12월　28일

파주시 조례 제 1475 호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농축산과 ☏940-8592
입안자	농 축 산 과 장	남 창 우
	농수산기반팀장	방 인 구
	담　　당　　자	조 다 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20조(현행과 같음)

□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명시(안 제19조)

제20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및 2018년 제18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최 종 환 ㊞

2018년　12월　28일

파주시 조례 제 1476 호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지속가능발전법」 및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따라 파주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관협력 기구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각 호”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란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인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설치한 민관협력기구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를 “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파주시 지속가능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
2. 파주시 지속가능발전계획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3. 파주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조사·연구
4. 파주시의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에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5. 파주시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위탁업무 및 대행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및 사업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회장 2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은 당연직 회원과 위촉직 회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공동회장은 위촉직 회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회원은 시 관련부서 국·과장 4명을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교육, 경제, 환경, 문화예술, 행정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 시민단체, 기업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추진 역량을 가진 사람

③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회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회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공동대표”를 “공동회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공동대표)”를 “(공동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① 공동회장은 당연직인 시장과 총회에서 위촉직 회원 중에서 선출한 회원이 된다. 이 경우 총회에서 선출한 공동회장을 상임회장으로 한다.

② 공동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달리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임회장이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다.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상임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인 공동회장이 그 직무를 행한다.

제7조제2항 중 “매년”을 “해마다”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를 각각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의 수립) ① 상임회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연도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이를 12월

말까지 협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③ 상임회장은 확정된 예산 지원계획에 따라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종전의 제10조) 제1항 중 “매년 2월중에”를 “해마다 2월에”로 하고 “해당할 때 상임대표가 소집한다”를 “해당하는 경우 상임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공동대표 2명중 1명”을 “공동회장”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회의는”을 “총회는”으로 하고 “개의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하며 “과반수이상”을 “과반수의”로, “상임대표”를 “상임회장”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푸른파주21”을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예산”을 “협의회의 예산안 의결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상임대표”를 “상임회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상임대표의 징계 및 해임”을 “상임회장의 징계 및 해임 의결”로 같은 항 제6호 중 “공동대표가”를 “공동회장이”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1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인 공동회장이 환경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회장이 된다.

③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파주시 환경수도사업단장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공동회장 중 1명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 운영 전반에 걸친 자문
2. 협의회 정책 방향의 설정
3.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자문
4. 감사추천

제11조(종전의 제12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관련부서 국·과장 4명 이내
2. 분과위원회 위원장
3. 사무국장
4. 협의회원 중 환경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당연직인 공동회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상임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사무국장이 된다.

같은 조 제3항 중 “공동대표”를 “공동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의 심의
3. 협의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의
4. 회원의 징계 및 포상 심의·의결
5. 회원의 해촉에 관한 심의·의결

제12조(종전의 제13조) 제1항 중 “푸른파주21 사업계획의”를 “협의회는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상임대표가 임명하고”를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상임회장이 임명하며”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추진상황”을 “추진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집하며, 사전에 사무국장과 협의해야 한다.”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 이 경우 사전에 상임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푸른파주21추진계획”을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회원의 해촉 등) 당연직인 공동회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회원으로서의 직무태만이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회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종전의 제15조)의 제목 “(사무국 운영)”을 “(사무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협의회 기능을 지원하는”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동대표 2명의 동의를 얻어 상임대표가”를 “상임회장이 당연직 공동회장의 동의를 받아”로 한다.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사무국장은 상임회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운영 전반에 걸친 사무처리
2. 협의회 및 각 위원회의 의사활동 지원
3. 협의회의 예산안 편성 및 결산 준비
4.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제16조제1항 중 “푸른파주21 사업계획의”를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의”로 한다.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 운영비
2.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의 일부

3. 그 밖에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환경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파주시 정책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중 “국제연합(UN)”을 “유엔”으로 “지방의제21”을 “지속가능발전”으로 하고 “시”를 “파주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된 협의회·위원회 및 회원·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위원회 및 회원·위원으로 본다.

소 관 부 서		환경보전과 ☏ 940-4453
입안자	환경보전과장	허 순 무
	환경기획팀장	김 수 태
	담 당 자	조 선 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21(Agenda 21)의 제28장과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 (목 적)** ----------「지속가능발전법」및「파주시 환경 기본조례」에 따라 파주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관협력 기구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푸른파주21”(“지방의제21”과 같다)이란 지역의 주민, 기업 및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시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그 주체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신 설>	**제2조(정의)** ---------- 다음과 ---.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 전을 말한다. 3.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란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법」및「파주시 환경 기본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인 지방의제

현 행	개 정 안
	21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설치한 민관협력기구를 말한다.
제3조(기능)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푸른파주21 추진계획” 수립과 추진 2. “푸른파주21 추진계획”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 3. “푸른파주21 추진계획” 과 관련한 조사·연구 4. “푸른파주21 추진계획” 실천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5. 그 밖에 푸른파주21 관련 업무	**제3조(기능)**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 1. 파주시 지속가능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 2. 파주시 지속가능발전계획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3. 파주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조사·연구 4. 파주시의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에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5. 파주시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위탁업무 및 대행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및 사업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10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원은 위촉직과 당 연직으로 구분하여 2년마다 파주시장(이 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시장은 위촉직 회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회원을 시 관련부서 국·과장 4명으로 임명한다.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회장 2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은 당연직 회원과 위촉직 회원으 로 구분하며, 당연직 공동회장은 위촉직 회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회원은 시 관련부서 국·과장 4명을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1. 기업인·상공인	1. 교육, 경제, 환경, 문화예술, 행정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 시민·사회단체 임직원	2. 시민단체, 기업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각급학교 교사 및 대학교수	3.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추진 역량을 갖춘 사람
<신 설>	③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회원의 임기는 그 직 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 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회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원) (생 략) 1. 공동대표 2명 2. ~ 5 (생 략)	**제5조(임원)** (현행과 같음) 1. 공동회장 ---- 2. ~ 5. (현행과 같음)
제6조(공동대표) ① 공동대표는 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상임대표 1명은 총회에 서 선출한다. ② 상임대표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총회 의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제6조(공동회장)** ① 공동회장은 당연직인 시장과 총회에서 위촉직 회원 중에서 선출한 회원이 된다. 이 경우 총회에서 선출한 공동회장을 상임회장으로 한다. ② 공동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달리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임회장이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다. ③ 상임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인 공동회장이 그 직무를 행한다.
제7조(감사) ① (생 략) ② 감사는 협의회 재정에 대해 감사하고	**제7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현 행	개 정 안
그 결과를 매년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 - - - - - - - - 해 마 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임기) ① 상임대표, 운영위원, 자문위원 및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② 회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시작하 며 회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기구) (생 략)	**제8조(기구)** (현행과 같음)
제10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제9조(총회)** ① ---------- ---------- 해마다 2월에 ----------해당하는 경우 상임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공동대표 2명 중 1명의 요구가 있을 때	1. 공동회장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상임대표의 징계 및 해임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는 ----------회의를 시작하고, -----과반수의 ---------- 상임회장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푸른파주21 추진계획의 승인	1.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
2. 예산, 결산 승인	2. 협의회의 예산안 의결 및 --------
3. 상임대표 선출	3. 상임회장 ---
4. (생 략)	
5. 상임대표의 징계 및 해임	
6. 그 밖에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	

현 행	개 정 안
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현행과 같음) 5. 상임회장의 징계 및 해임 의결 6. ------ 공동회장이 - - - - - - - - - - - - - - - - - -
제11조(자문위원회) ① 자문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하며 환경전문가 등 각 계각층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제10조(자문위원회)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인 공동회장이 환경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상임대표가 된다.	② 자문위원회의의 위원장은 상임회장이 된다.
③ 자문위원회 간사는 시 환경 관련부서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파주시 환경수도사업단장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공동대표 2명 중 1명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공동회장 중 1명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협의회 운영 전반에 걸친 자문 2. 협의회 정책 방향의 설정 3. 운영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지도 4. 감사추천	⑤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협의회 운영 전반에 걸친 자문 2. 협의회 정책 방향의 설정 3.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자문 4. 감사추천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삭제 2013.12.30) 2. 환경 관련부서 등 국·과장 4명 3. 분과위원장 4. 사무국장 5. 그 밖에 협의회원 중 환경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관련부서 국·과장 4명 이내 2. 분과위원회 위원장 3. 사무국장 4. 협의회원 중 환경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당연직인 공동회장이 위촉하는 사람

현 행	개 정 안
②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간사는 협의회 사무국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상임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사무국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중 1명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공동회장 - - - - - - - - - - ----------.
④ (생 략) 1. “푸른파주21 추진계획”의 심의 2. 예산 및 결산(안) 심의 3. 회원의 징계 및 포상 심의·의결 4.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부의하는 주요 사업의 심의·의결 5. 회원 및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심의·의결	④ (현행과 같음) 1.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의 심의 3. 협의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의 4. 회원의 징계 및 포상 심의·의결 5. 회원의 해촉에 관한 심의·의결
제13조(분과위원회) ① 푸른파주21 사업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연생태보전분과, 도시생활환경분과, 교육 및 여성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상임대표가 임명하고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며, 소관별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 또는 보고해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소	**제12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는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의 ---------- ----.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상임회장이 임명하며 ----------.
	③ ---------- ----------

현 행	개 정 안
집하며, 사전에 사무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⑤ (생 략) ⑥ (생 략) 1. ~ 2. (생 략) 3. 교육·여성분과위원회 : 푸른파주 21 추진계획 실천을 위한 시민교육·청소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여성 참여 증진	- - - 추진사항 ----------. ④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 이 경우 사전에 상임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 ----------
제14조(위촉 해제) 시장은 회원 및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회원 또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해제한다. 1.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이나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제13조(회원의 해촉 등)** 당연직인 공동회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회원으로서의 직무태만이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회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사무국 운영) ① 협의회 기능을 지원하는 사무국을 둔다. ② (생 략) ③ 사무국장은 공동대표 2명의 동의를	**제14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 ② (현행과 같음) ③ -------- 상임회장이 당연직 공동

현 행	개 정 안
얻어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회장의 동의를 받아 ------.
④ 사무국장은 상임대표의 명을 받아 협의회 운영전반에 걸친 예산·회계 운영과 푸른파주21 추진계획의 집행관리 및 지원을 담당한다.	④ 사무국장은 상임회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운영 전반에 걸친 사무처리 2. 협의회 및 각 위원회의 의사활동 지원 3. 협의회의 예산안 편성 및 결산 준비
⑤ (생 략)	4.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의 수립 및 집행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의 수립)** ① 상임회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이를 12월 말까지 협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③ 상임회장은 확정된 예산 지원계획에 따라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보조금) ① 시장은 푸른파주21 사업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협의회 운영비 2. “푸른파주21 추진계획” 실천을 위한 사업비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6조(보조금)** ① ---- 파주시 지속가능 발 전 추 진 계 획 의 ----------. 1.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 운영비 2.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의 일부 3. 그 밖에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추진

현 행	개 정 안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상임대표는 매년 7월 31일까지 다음연도 “푸른파주21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삭 제>
③ 시장은 “푸른파주21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이를 그해 12월 말까지 협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삭 제>
④ 협의회는 확정된 예산 지원계획에 따라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삭 제>
⑤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정책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대표는 별도의 T/F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환경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파주시 정책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대외협력) 협의회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와 국내 지방의제21 추진단체 및 시 소재 관계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거나 공동으로 환경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제 1 8 조 (대 외 협 력)** ---------- ---------- ---------- 유엔 ----------지속가능발전 --------- 파주시 ---------- ----------.

□ 개정이유

○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에서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명칭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의결하여 관련 내용이「지속가능발전법」에 반영됨에 따라 협의회 명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명「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파주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 협의회 회원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공동대표'를 '공동회장'으로, '상임대표'를 '상임회장'으로 명칭변경
(안 제10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 그 밖에 약칭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안 제2조, 안 제7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8조)

제20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및 2018년 제19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최 종 환 ㊞

2018년　12월　28일

파주시 조례 제 1477 호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 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파주시(이하 “시” 라한다)에 설치하는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사전점검”이란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의 허가나 신고를 받을 때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과 사용승인 신청을 받을 때 현장에서의 이동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후점검”이란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되는지 점검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확인·지도
4.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
5.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6.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장 및 관련 기술자, 평생교육사 등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소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사전·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
2.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 시장은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①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대상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 반영) 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에 설치하는 이동편의시

설로 한다.
③ 사전점검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실시하며, 사후점 검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④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 기관 및 해당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점검결과 보고서의 검토 및 점검결과의 반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점검반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요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3명으로 구성된 이동편의시설 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편성할 수 있다.

1. 파주시 소속 공무원 1명
2. 센터 소속 기술자 1명
3.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중 점검 대상 이동편의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 1명

② 점검반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사후점검 업무
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보고서”라 한다) 작성

③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점검에 관한 협조) ① 시장은 점검반이 사전·사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관련 교통사업자 및 도로관리청에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점검반의 효율적 사전·사후점검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반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반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모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철도교통과 ☏ 940-5772
입안자	목진혁 의원

□ 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골자

○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에 대한 시책 추진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확인·지도,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조치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제20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및 2018년 제19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최 종 환 ㊞

2018년　12월　28일

파주시 조례 제 1478 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1항 본문 중 “균형발전과”를 “도시재생과”로 한다.
제8조의2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여지 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 본문 중 “도시재생과”를 “지역발전과”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같은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동주택 관리 및 건축에 관한 사항
 5. 산업단지의 조성 및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별표 3,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자치행정과 ☏940-4123
입안자	자치행정과장	김 영 준
	인 사 팀 장	양 성 원
	담 당 자	이 종 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도시균형발전국) ① 도시균형발전국은 한시기구로 하며 도시개발과, 균형발전과, 투자진흥과를 둔다.	**제8조의2(도시균형발전국)** ① ----------도시재생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업단지의 조성 및 공여지 개발 등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 공여지 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3.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삭 제>
제9조(안전건설교통국) ① 안전건설교통국에 안전총괄과, 건설과, 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재생과를 둔다.	**제9조(안전건설교통국)** ① ----------지역발전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공동주택, 건축 및 주거환경개선,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관리 및 건축에 관한 사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산업단지의 조성 및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1% 이내	7% 이내	24% 이내	33% 이내	24% 이내	10% 이상	1%이내

※ 비고: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9% 이내	91% 이상

※ 비고: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이하
비 율	-	-	40% 이내	60%이상

※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5]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제27조 관련)

관 리 기관별	소속부서	구 분		정원(명)	운 영 시 한	비 고
		직 종	직 급			
본청	도시균형발전국	일반직	4급	1	2019년 12월 31일까지	

□ 개정이유

○ 파주 프로젝트 조성사업, 통일경제특구 추진, 운정3지구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기설치한 한시기구 설치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미완료된 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사항을 반영함.

□ 주요골자

○ 가. 한시기구인 도시균형발전국 존속기한을 연장함.(안 별표 5)

▪ 존속기한 연장 : 2019. 1. 1. ~ 2019. 12. 31. (1년 연장)

○ 한시기구 업무와 관련된 도시재생과를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도시균형발전국으로 이동하고 균형발전과를 도시균형발전국에서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이동하고 과 명칭을 변경(안 제8조의2, 제9조)

▪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재생과 → 도시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

▪ 도시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 → 안전건설교통국 지역발전과

○ 탄력적인 조직인원 운영을 위하여 별정직 직급 정원 조정(안 별표 3)

▪ 6급 상당 : 40% 이내 / 7급 이하 : 60% 이상

제20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및 2018년 제18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최 종 환 ㊞

2018년　12월　28일

파주시 규칙 제 646 호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농축산과 ☏ 940-8592
입안자	농 축 산 과 장	남 창 우
	농수산기반팀장	방 인 구
	담　　당　　자	조 다 솜

[별지 제2호서식]

차 용 증 서

금 원정

위의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이 증서를 제출합니다.

1. 이 자금은 지정된 사업자금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겠음.
2. 이 자금은 년 월 일까지 회에 걸쳐 1회에 원씩 분할상환 또는 일시 상환하겠음.
3. 법령과 귀 시의 조례 규칙 및 그에 의거한 귀하의 명령과 지시를 준수하겠음.
4. 위의 각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어떠한 조치를 하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출하지 않겠음.

년 월 일

채무자 주 소

성 명

파 주 시 장 귀하

(첨부) 신분증 사본 1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인감) 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한 농어업소득사업융자신청서와 제3조의 서약서에는 신청인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읍·면·동장이 인감대장과 대조확인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삭 제>

□ 개정이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불필요한 요구서류를 감축하기 위하여 인감 요구조항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인감요구 조항 삭제

○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 및 연대보증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2호서식)

제20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및 2018년 제17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최 종 환 ㊞

2018년　12월　28일

파주시 규칙 제 647 호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8호서식”을 “제18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40조제7항”을 “제4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40조제8항”을 “제40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40조제7항”을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상수도과 ☏940-5882
입안자	상수도과장	김찬호
	수도요금팀장	조우현
	담 당 자	임근영

[별지 제1호서식]

급 수 공 사 시 행 신 청 서

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신청함.
2.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배수관 분기지점부터 주계량기까지의 모든 시설물은 시에 기부채납 함.

공사구분	□신설	□개조(증설)	□임시	□수전분리
수전위치				
신청현황	건물유형	□기존건물 □신축건물	□증축건물	□기타
	용 도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근생시설	□기타
	층 수	층	연 면 적	㎡
	세 대 수	세대	급수구경 및 수량	㎜, 개소 ㎜, 개소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대행업소 ○○건설㈜ 대표 ○ ○ ○ (인)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 허가서 1부.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 하고자 할 경우) 1부.

상수도과 -		
20 . . .		
담당자	담당	과장

파주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특 수 가 압 시 설 설 치 신 청 서

설치위치						
급수종별			공사구분	임시, 신설, 증설, 시설변경		
월소요량			모타 및 펌프규격			
건축허가유무	허 가 번 호		허 가 년월일		건축주 성 명	

위와 같이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제15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다만, 본인 소유의 특수가압시설공사가 완공되면 시설 일체를 귀 시에 기부 채납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파주시장 귀하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서식]

급수 개전 ·폐전·휴전 신청서

관리번호		수전번호		업종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핸 드 폰			
주 소					
사 유					

위와 같은 사유로 「파주시 수도급수조례」제26조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개전·폐전·휴전) 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연 락 처 :)

파 주 시 장 귀하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담 당 자	담 당	과 장
※ 첨부서류 : 수도요금 영수증 1매			

[별지 제9호서식]

급수전 명의변경 신청서

현 소 유 자	관리번호		수전번호		업종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핸 드 폰			
	주 소					
전 소유자	성 명		전 화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제24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상기 수도전을 본인의 명의로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연 락 처 :)

파 주 시 장 귀하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건물소유 증빙서류 1부 수도요금 영수증 1매	담 당 자	담 당	과 장

[별지 제14호서식]

상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

수용가	관리번호		수 전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핸 드 폰	
	주 소			
신고내용	누수일시			
	누수위치			
	누수원인			

위와 같이 옥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였기에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제40조 제3항, 제4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옥내누수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연 락 처 :)

파 주 시 장 귀하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1. 입증서류 : 수선사진 3매(누수장면, 공사장면, 공사후 배경사진)

2. 누수공사확인서 :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수선확인서

3. 수도요금 영수증 1매

〔별지 제15호서식〕

수도계량기 시험청구서

급수종별및급수번호					제 호
급 수 소 재 지					
수 도 계 량 기 규 격		계량기번호		지침수	
시 험 료	원정				
사 용 량 변 동 사 항					
전월사용량	사 용 료	금월사용량	사 용 량	비 고	

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의외로 증감되어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수도계량기 시험을 신청합니다.

철거일자 년 월 일

신청일자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서명 또는 인)

취급자	담 당	과 장

보 관 증

물품명 : 수도계량기

상기물품을 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합니다.

년 월 일

수도담당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6호서식]

수도계량기 수리신청서

급수종별 및 급수번호	제 호	제 호		
급수소재지				
수도계량기규격		계량기번호		지침수	
고장내역				

상기와 같이 수도계량기를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선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취급자	담 당	과 장

〔별지 제17호서식〕

상수도 누수요금 분할납부 신청서

수용가	관리번호			수 전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핸 드 폰				
	주 소							
신고내용	고지금액	금 월 사용량 (m^3)		이전3개월 평균사용량 (m^3)		누수량 (m^3)		
		부과 결정량 (m^3)		고지금액 (원)				
	분할조건	1차		2차		3차		

위 사람은 옥내 상수도누수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가 고지되었기에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연 락 처 :)

파 주 시 장 귀하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당월 수도요금 고지서 1부	담 당 자	담 당	과 장

[별표 제18호서식]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수용가	관리번호		수 전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핸 드 폰	
	주 소			
감면대상	감면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 장애인 ( ) · 기타 ( )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제40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연 락 처 :)

파 주 시 장 귀하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1.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도요금 영수증 1매

［별지 제19호 서식］

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규 · 변경) 신고서

접 수 번 호 :　　접 수 일 자 :
관 리 번 호 :
주　　소 :
소 유 주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위 본인은 1개의 수도계량기로 1주택에서 가정용 (　　)가구가 사용하고 있으니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제31조에 의해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전월 납부 수도요금영수증 사본 및 전입세대열람 등 1부.

세 대 명 부 (기재란 부족시 이면기재)	세 대 주 성 명	세 대 주 성 명	세 대 주 성 명	세 대 주 성 명
읍 면 동 장 확 인 란	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파주시　　읍.면.동장			

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신고서 접수증

관 리 번 호 :
주　　소 :
소유자 또는 신청인:　　신청가구수 :　　세대

귀하께서 제출하신 상하수도요금 가구분할 적용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접수담당자　　(서명 또는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공동주택 등에 대한 사용량 조정)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른 사용량조정은 각 호별로 조례 제14조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실시하여 월별 총사용수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삭 제>
제24조(요금감면 신청 및 기준) ① 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18호서식에 따라 수도요금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요금감면 신청 및 기준) ① ---------- 제18호서식----------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사용량 10톤	<삭 제>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장애인 : 사용량 10톤	<삭 제>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특1급, 특2급의 관광호텔업 : 상수도 사용료의 20%	<삭 제>
4.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및 마을회관 : 사용료 전액	<삭 제>
② 조례 제40조제7항에 따라 누수량에	② --- 제40조제3항----------

현 행	개 정 안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상수도 누수요금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 ---------- --.
③ 제2항에 따른 누수요금 감면신청이 있을 경우 즉시 누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누수량을 포함한 총사용량은 조례 제40조제8항에 따라 요금을 부과한다.	③ ---------- ---------- ---------- 제40조제4항----------.
④ 조례 제40조제7항에 따른 누수발생시 상수도사용량은 수용가 신청시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3개월 분할 부과할 수 있다.	④ -- 제40조제3항---------- ---------- ---------- -----.

□ 개정이유

○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수도급수 조례와 중복 또는 오기된 조문 등을 정비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수도급수 조례와 중복 또는 오기된 조문의 삭제 및 정비(안 제20조, 제24조)

○「전자정부법」개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란을 추가하고 오기된 내용 등을 정비(안 별지 제1호,제6호,제8호,제9호,제14호∽제19호서식)

제20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및 2018년 제17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최 종 환 ㊞

2018년　12월　28일

파주시 규칙 제 648 호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긴급을 요하는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사용자 및 관리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의 취지와 청소요금, 청소의뢰 방법 등을 기재하여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안내를 해야 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사용자 및 관리자가”를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사용자 및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을 “경우에는 청소이행 기간을 정하여”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25조에 따른”을 “조례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

유”를 “공익상 특별한 사유”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1항에 해당하는 사용자로서 사용료를”을 “조례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을” 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의1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하수도과 ☏ 940-5530
입 안 자	하수도과장	한 광 우
	하수행정팀장	조 윤 옥
	담 당 자	황 지 원

[별지 제13호서식]

<table>
<tr><td colspan="6">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갱신)신청서</td><td>처리기간
7 일</td></tr>
<tr><td rowspan="2">신청인</td><td>주 소</td><td colspan="2"></td><td>상 호</td><td colspan="2"></td></tr>
<tr><td>대표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 colspan="2">공사시행실적
(최근 1년간)</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보 유 인 력</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보 유 장 비</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7">「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 지정(갱신)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td></tr>
<tr><td colspan="7">구비서류 : 1. 면허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재산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장비 명세서 1부
5. 최근 1년간 주요공사 실적 1부</td></tr>
<tr><td colspan="7">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td></tr>
<tr><td colspan="7">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td></tr>
</table>

[별지 제24호서식]

□ 사용료 □ 점용료 □ 수수료 □ 부담금 감면 신청서					처리기한 5일
감 면 신청자	하수번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신청내용	감면기간				
	감면사유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① (생 략)	제1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사 용자 및 관리자에게 내부청소 안내를 해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긴급을 요하는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제16조(내부청소안내 등) ①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안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제16조(내부청소안내 등) ① 시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사용자 및 관리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의 취지와 청소요금, 청소의뢰 방법 등을 기재하여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안내를 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사용자 및 관리자가 내부청소 안내서를 받고도 청소기한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청소촉구 통지를 할 수 있다.	③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사용자 및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청소이행기간을 정하여 ----------.
제26조(감면)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및 그 밖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6조(감면) ① 조례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월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사용량에 대하여 감면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 공익상 특별한 사유----------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용자로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개정이유

○ 관련 법규 개정 사항 반영 및 시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안내와 긴급청소 규정을 구분 정비함.
(안 제15조, 안 제16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용하여 “마목”을 삭제 함. (안 제26조)

○ 별지 서식 중 「전자정부법」제36조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을 반영함.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 불필요하거나 이중 등재된 서식을 삭제함.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의 1서식)

2018년 제19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최 종 환 ㊞

2018년　12월　28일

파주시 규칙 제 649 호

파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파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50,000원”을 “60,000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29조제5항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 940-4101
입안자	자 치 행 정 과 장	김 영 준
	총 무 팀 장	천 유 경
	담 당 자	박 광 현

〔별지 제2호서식〕

당직근무일지

20 . . .(요일)

담 당 자	총 무 팀 장	결 재

당직 구분	근무지	직 책	성 명	서 명
일직 숙직	당직실	당직반장		
		당직원		
		당직원		
		당직원		
		당직원		
		당직기사		

지시 받은 사항		조치 사항	
지시 한 사항		조치 결과 확인	

보고 사항	시 간 :	도: 시:	당직중 점검사항	1.세콤운영 2.근무사항 3,순찰사항 4.기타사항
	시 간 :	도: 시		

근 무 조 편 성			
근무시간		성명	이상 유무
	~		
	~		
	~		
	~		
	~		
	~		
	~		
	~		
	~		

당직근무 중 상황발생 내용

* 당직근무 중 주요상황 발생 기재하고 총무팀장 에게 즉시 전화 통보

공 인 함 인 계 인 수 부

월 일	인계인수 시간	인 계 자			인 수 자			인계인수 사항	이상 유무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관인함	
								관인함	

기관별 당직사항 기록

구분 / 기관명	당 직 자			최종퇴청자	연락사항 (이상유무)	자 택
	성명	당직신고시간	재택당직신고시간	최종퇴청시간		휴대전화
문 산 읍		:	:			
조 리 읍		:	:			
법 원 읍		:	:			
파 주 읍		:	:			
광 탄 면		:	:			
탄 현 면		:	:			
월 롱 면		:	:			
적 성 면		:	:			
파 평 면		:	:			
교 하 동		:	:			
운 정 1 동		:	:			
운 정 2 동		:	:			
운 정 3 동		:	:			
금 촌 1 동		:	:			
금 촌 2 동		:	:			
금 촌 3 동		:	:			
장 단 출 장 소		:	:			
보 건 소		:	:			
농 업 기 술 센 터		:	:			
중 앙 도 서 관		:	:			
교 하 도 서 관		:	:			
차량등록사업소		:	:			
도로관리사업소		:	:			
공원관리사업소		:	:			
관 광 사 업 소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조의2(당직수당) 1. 당직근무자에게는 1회 50,000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2. (생 략)	**제4조의2(당직수당)** 1. ---------- 60,000원의---------. 2. (현행과 같음)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서 총무과장이 발령하고 소속 담당관·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 자치행정과장---------- ----------.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제4항에 따른 본청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 총무과, 회계과 직원 및 예비군 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2. 상황처리반 : 총무과의 직원, 각 담당관·과 주무업무담당의 직원으로 편성한다. 3. 연락반 : 총무과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⑥ ~ ⑧ (생 략)	**제29조(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 자치행정과---------- ----------. 2. ------- : 자치행정과---------- ----------. 3. ----- : 자치행정과---------- ----------. ⑥ ~ ⑧ (현행과 같음)

□ 개정이유

○ 당직근무시 소요되는 실제경비와 시간외 근무수당 등 보상성격의 다른 수당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적정한 당직근무수당을 결정·시행하고자「파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을 1회 50,000원에서 60,00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함.
(안 제4조의2)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서식 개정
(안 제7조, 안 제29조, 별지 제2호서식)

2018년 제19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최 종 환 ㊞

2018년　12월　28일

파주시 규칙 제 650 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6, 별표7,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자치행정과 ☏940-4123
입안자	자치행정과장	김 영 준
	인 사 팀 장	양 성 원
	담 당 자	이 종 호

□ 개정이유

○ 기설치한 한시기구 설치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미완료된 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 존속기한의 연장에 대한 사항이 반영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 분장사무, 직급·직렬별 정원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본청 부서의 변경 등 조례개정에 따라 본청 과장의 직급을 정함(안 별표 1)

○ 부서별 사무분장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변경함
(안 별표 6, 별표 7)

○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을 변경함(안 별표8)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파 주 시 장　　최 종 환 ㊞

2018년　12월　28일

파주시 훈령　제 247 호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자치행정과 ☏ 940-4123
입안자	자치행정과장	김 영 준
	인 사 팀 장	양 성 원
	담 당 자	이 종 호

□ 개정이유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부서별 정원을 조정함.

□ 주요골자

○ 부서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1)

파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파 주 시 장　　최 종 환 ㊞

2018년　12월　28일

파주시 훈령　제 248 호

파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

파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을 “파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제18조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도”를 “제19조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신규면허의 관할구역 (파주시)”를 “신규면허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면허신청접수기일”을 “면허신청 접수기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이하“시”라 한다”를 “이하“시장”이라 한다”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대하여도 1/2”를 “대해서도 2분의 1”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결과를 파주시청 게시판 및 파주시”를 “결과를 시”로, “통지한다”를 “통지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

은 조 제5항 중 “제39조에도”를 “제39조에따라”로, “개인택시운전자격증명”을 “개인택시 운전자격증명”으로 한다.

제3조 중 “인정한”을 “인정하는”으로, “제1순위1호 부터 3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를 “제1순위부터 제3순위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접수 개시일 1개월 전에 수시면허 대상자의 범위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사고운전경력은 경찰관서의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에 기재된 최종교통사고일”을 “무사고 운전 경력은 경찰관서의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에 기재된 최종 교통사고일”로, ““교통사고”라 함은”을 ““교통사고”는”으로, “종류의 여하에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종류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과실이”를 각각 “과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운전지역의 지리를 숙지토록 하기 위하여 신규면허자”를 “신규면허자”로, “3년간 계속하여 파주시내”를 “4년중 3년 이상 국내”로, “파주시내 거주기간이 2년”을 “시관할 내 거주기간이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각호를 삭제한다.

③ 제2항의 “국내 운전경력”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을 따른다.

제4조제4항 중 “인정할”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일회사 장기근속경력은 회사의 인사발령

원부에 기재된 취업 일부터 퇴직한 사실이 없이 면허신청일까지”를 “시 관할 내 근속 경력은 시 관할 내 회사(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사발령 원부에 기재된 취업일부터 면허신청일까지 퇴직한 사실 없이”로, “경우에는”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7일”을 “60일”로, “회사”를 “관내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분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를 “분리 또는 합병으로”로, “인하여 7일”을 “60일”로, “회사의 운전자”를 “관내회사의 운전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기 무사고운전경력을 재산정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를 “해당 업종별 장기 무사고 운전 경력을 재산정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장기 무사고운전경력자를”을 “장기 무사고 운전 경력자를”로, “택시 장기 무사고운전경력자, 연장자”를 “연장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85년”을 “1985년”으로,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로,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과 장애인”을 ““국가유공자”라 한다)과 장애인, 군·관용차 운전자”로, “호에 따라서”를 “호와 같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절사한다”를 “반올림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1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1대를”을 “부족할 경우에는 택시 면허대수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유공자등은”을 “국가유공자 등은”으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별표1”을 “별표 1”로,

“별표1의 1~3급”을 “별표 1의 제1급에서 제3급까지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할당제 적용을 받는 군·관용차 운전자는 군·관용차 운전경력중 관내 운전 경력이 1년 이상 되어야 한다.

5. 할당제 신규 면허신청자는 제2조제1항과 제4조의 운전경력 및 거주요건에 부합하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할당제 적용을 받는 신청자간의 경합은 제5조제2항의 동일순위 경합시 우선순위에 따른다.

6. 신규면허 공급시 제2호, 제3호, 제4호 및 5호에 적합한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할당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면허대수는 업종별 비율제를 적용하여 배정하되 그 배분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면허 대수 산정시 소수점은 반올림하고 면허 할당대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택시 면허대수에서 배정하며, 배분비율에 따른 배정 후 잔여대수와 면허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택시에 배정한다.

1. 택시 : 82퍼센트
2. 시내·외버스 및 마을버스(택시 합산경력을 포함한다) : 9퍼센트
3.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비사업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등(이하 “전세버스 등”이라 한다) : 4퍼센트
4. 국가유공자 : 2퍼센트
5. 장애인 : 2퍼센트
6. 군·관용차량 : 1퍼센트

제6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종사한 기간 중 결근, 휴직, 운전면허정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면

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와 근속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제6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입사, 퇴사 등으로 근속하지 못한 해당 월은 실제근무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2. 매월 그달의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결근 또는 휴직일수가 만근일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때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하며, 실제근무일수는 만근일수를 30일로 환산한 값을 곱한 것으로 한다.
3. 실제 근무한 일수가 만근일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때에는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한다. 다만, 결근, 휴직, 그밖의 사유로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실제근무일수가 100분의 50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며, 실제 근무한 일수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한다.
4. 해고 후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복귀한 경우에는 해고일부터 원상회복된 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5. 불기소처분사유서 및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 없음이 입증되는 피해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및 요양기간은 최대 2년까지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교통사고”란 경찰관서가 발행한 교통사고 확인원이나 법원판결서 및 병원입원확인서, 보험회사의 진료비 지급내역서에 의해 증명되는 영업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말하며 경찰관서에 미신고 되었다 하더라도 법원판결에 의하여 피해교통사고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한 단체협약에서의 노동조합업무 전임자와 상급단체인 노동조합의 노조업무전임자의 재임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복수노조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인정하되, 소속회사의 대표자가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7. 소속 운수업체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산업재해로 요양한 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가해자 또는 제3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다른 법령에 따라 직접 보상 받은 경우에도 산업재해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기록 등 공신력 있는 자료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로 입증되어야 한다.

8. 부당한 승무정지는 그 기간의 절반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법원 판결문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운전경력증명발급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경력증명발급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급여지급관계서류”를 “급여지급 관계서류”로, “확실한 근거 에”를 “확실한 근거에”로, “발급하여서는”을 “발급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한시택시사업자”를 “한시 택시사업자”로, “때에 한하여”를 “경우에 한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자의 운전경력에 대하여”를 “사람의 운전경력에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택시운수종사자”를 “택시운수 종사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함”을 “한다”로, “산정할 경우에는 급여지급관계서류, 배차일보, 국민건강보험지급관계서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 관계서류, 배차일지, 국민건강보험 지급관계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2호 중 “인하여 소속회사”를 “소속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이전)에 대하여”를 “이

전의 기간을 말한다.)에 대해서”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 때”를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임은”을 “해임 등”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승계 포함)·대리운전”을 “(상속승계를 포함한다.)·대리운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파주시 내”를 “시 관할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7년간 관내”를 “7년간 시 관할 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가능함”을 “가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파주시내 거주기간이 신청·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유지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파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19조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 ---------- --------.
제2조(신규면허) 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의 관할구역(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공개모집 하되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하여야 하며,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을 면허신청접수기일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파주시장(이하 “시”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에 대하여도 1/2 범위 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조(신규면허) ① ---------- ---- 신규면허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사람을 ---------- ---------- ---------- ---- 면허신청 접수기일 ---- ----------. ----------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 대해서도 2분의 1 ---------- ----------.

② 제1항의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별표1로 하고 면허신청 공고문에는 우선순위 내용을 반드시 게재하여야 한다.	② ----------별표 1----------.
③ 시장은 심사결정 결과를 파주시청 게시판 및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③ ---------- 결과를 시 ----------통지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개인택시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9조에도 "개인"이라고 표시하고 차체외부 상단의 빈차 표시 등에도 "개인"이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개인택시운전자격증명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도록 차내의 정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 제39조에따라 ----------개인택시 운전자격증명----------.
제3조(신규면허의 특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순위1호 부터 3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시로 면허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3조(신규면허의 특례) ---------- 인정하는 ----------제1순위부터 제3순위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 이 경우 시장은 신청접수 개시일 1개월 전에 수시면허 대상자의 범위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운전경력 및 거주요건) ① 무사고운전경력은 경찰관서의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에 기재된 최종교통사고일부터 면허신청일까지의 경력으로 하되, “교통사고”라 함은 사고의 경중 또는 종류의 여하에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록된 모든 사고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사고로 본다.	제4조(운전경력 및 거주요건) ① 무사고 운전 경력은 경찰관서의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에 기재된 최종 교통사고일---------- ---------- “교통사고”는 ---------- 종류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
1. 교통사고에 관하여 무죄판결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1. ---------- ---------- 과실 ----------
2.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교통사고 중 불기소처분 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사유	2. ---------- ---------- ---------- ---------- 과실 ----------
② 운전지역의 지리를 숙지토록 하기 위하여 신규면허자, 대리운전자, 양수자의 경력 중에는 신청일 또는 신고일부터 역산하여 3년간 계속하여 파주시내 운전경력이 있으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파주시내 거주기간이 2	② 신규면허자---------- ---------- ---------- ---------- - 4년중 3년 이상 국내 ---------- ---------- ---- 시 관할 내 거주기간이 1

년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뺑소니 차량의 검거 등으로 신변안전을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년 ----------. ---------- ---------- ---------- ---------- ----------.
③ 제2항의“파주시 내 운전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③ 제2항의 “국내 운전경력”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을 따른다.
1. 노선업종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사업구역에 있거나, 노선의 기점 또는 종점이 사업구역안에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화물자동차”라 한다)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제1항의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의 운전경력	<삭제>
2. 구역업종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사업구역에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운전경력	<삭제>
3. 다른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	

용자동차·자가용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건설기계운전의 경우 사용본거지가 사업구역에 있는 다른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자가용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건설기계의 운전경력	<삭제>
④ 제2항의 자격요건은 해당지역의 운전기사 수급사정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완화할 수 있다.	④ ---------- 인정하는 ----------.
제5조(면허발급우선순위 적용기준 등) ① 동일회사 장기근속경력은 회사의 인사발령원부에 기재된 취업 일부터 퇴직한 사실이 없이 면허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운전자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회사 운전자의 신분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5조(면허발급우선순위 적용기준 등) ① 시 관할 내 근속 경력은 시 관할 내 회사(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사발령 원부에 기재된 취업일부터 면허신청일까지 퇴직한 사실 없이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1. 퇴직후 7일 이내에 퇴직하였던 회사에 다시 운전자로 취업한 경우	1. ---- 60일 ---------- 관내회사----------
2. 회사의 분리 또는 합병으로	2. ---- 분리 또는 합병으로 --

인하여 소속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와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7일 이내에 다른 회사의 운전자로 취업한 경우	---------- ---------- 60일 ---------- 관내회사의 운전자--------
② 동일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동일순위에 오른 경력시점부터 장기 무사고운전경력을 재산정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장기 무사고운전경력자를 우선하고, 그래도 경합이 있을 때에는 택시 장기 무사고운전경력자, 연장자의 순으로 한다.	② ---------- ---------- ---- 해당 업종별 장기 무사고운전 경력을 재산정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 장기 무사고 운전 경력자를 ---------- -------- 연장자---------- ----------.
③ 신규면허시 참작할 표창은 운전직 종사 기간 중에 받은 표창으로 하며, 85년 5월 이전에 국무위원의 표창을 받은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 ---------- --------- 1985년 --------- ----------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 --------.
④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과 장애인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할당 공급한다.(이하 “할당제”라고 한다)	④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국가유공자”라 한다)과 장애인, 군·관용차 운전자-- 호와 같이 --

1. 면허대수의 5퍼센트를 할당하며, 소수점은 절사한다. 다만, 면허 할당대수가 1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1대를 배정한다.	1. ---------- 반올림한다. ---------- 부족할 경우에는 택시 면허대수에서 ----.
2. 할당제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와 유족 중 1명으로 한정한다.	2. ---------- 국가유공자 등은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3. 할당제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의 지체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의 1~3급 장애인으로 규정한다.	3. ---------- 별표 1---------- 별표 1의 제1급에서 제3급까지의 ----.
4. 할당제 신규면허신청자는 제2조제1항과 제4조의 운전경력 및 거주요건에 부합하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자이어야 하며 할당제 적용을 받는 신청자간의 경합은 제5조제2항의 동일순위 경합시 우선순위에 따른다.	4. 할당제 적용을 받는 군·관용차 운전자는 군·관용차 운전경력중 관내운전 경력이 1년 이상 되어야 한다.

5. 신규면허 공급시 상기‘2’호, ‘3’호 및 ‘4호’에 적합한 신청인원이 없을시 에는 할당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할당제 신규 면허신청자는 제2조제1항과 제4조의 운전경력 및 거주요건에 부합하고 시행규칙 제19조의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할당제 적용을 받는 신청자간의 경합은 제5조제2항의 동일순위 경합시 우선순위에 따른다.
<신설>	6. 신규면허 공급시 제2호, 제3호, 제4호 및 5호에 적합한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할당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면허대수는 업종별 비율제를 적용하여 배정하되 그 배분비율은 택시 70퍼센트 , 시내・외 버스 및 마을버스(택시합산경력 포함) 18퍼센트 ,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군・관용차량(비사업용 자동차 포함) 등 (이하 “전세버스 등”으로 한다) 7퍼센트 , 국가유공자 등 5퍼센트 로 한다. 다만, 면허 배정대수가 1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1대를 배정하고 배분비율에 따라서 면허대수 산정 시 소수점은 절사하며, 배분비율에	⑤ 면허대수는 업종별 비율제를 적용하여 배정하되 그 배분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면허 대수 산정시 소수점은 반올림하고 면허 할당대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택시 면허대수에서 배정하며, 배분비율에 따른 배정 후 잔여대수와 면허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택시에 배정한다. 1. 택시 : 82퍼센트 2. 시내・외버스 및 마을버스 (택시 합산경력을 포함한다) : 9퍼센트 3.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건설

따른 배정 후 잔여대수에 대해서는 택시에 우선하여 배분하고, 면허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택시, 시내·외 버스 및 마을버스(택시합산경력 포함), 전세버스 등, 국가유공자 등 순으로 배정한다.	기계(비사업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등(이하 “전세버스 등”이라 한다) : 4퍼센트 4. 국가유공자 : 2퍼센트 5. 장애인 : 2퍼센트 6. 군·관용차량 : 1퍼센트
제6조(운전경력산정 및 발급) ①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상회복된 기간과 운전자로서 도내의 운송회사 노동조합장으로 근무한 기간 및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인정되는 “피해교통사고”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며, 결근 또는 휴직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제6조(운전경력산정 및 발급) ① ----------. 다만 종사한 기간 중 결근, 휴직, 운전면허정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와 근속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매월 그달의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결근 또는 휴직일수가 만	1. 입사, 퇴사 등으로 근속하지 못한 해당 월은 실제근무일수

근일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때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본다.	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2. 실제 근무한 일수가 만근일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때에는 운전경력을 1개월로 본다.	2. 매월 그달의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결근 또는 휴직일수가 만근일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때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하며, 실제근무일수는 만근일수를 30일로 환산한 값을 곱한 것으로 한다.
2. 실제 근무한 일수가 만근일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때에는 운전경력을 1개월로 본다.	3. 실제 근무한 일수가 만근일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때에는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한다. 다만, 결근, 휴직, 그밖의 사유로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실제근무일수가 100분의 50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며, 실제 근무한 일수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한다.
	4. 해고 후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복귀한 경우에는 해고일부터 원상회복된 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5. 불기소처분사유서 및 공소부

	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 없음이 입증되는 피해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및 요양기간은 최대 2년까지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교통사고”란 경찰관서가 발행한 교통사고 확인원이나 법원판결서 및 병원입원확인서, 보험회사의 진료비 지급내역서에 의해 증명되는 영업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말하며 경찰관서에 미신고 되었다 하더라도 법원판결에 의하여 피해교통사고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한 단체협약에서의 노동조합업무 전임자와 상급단체인 노동조합의 노조업무전임자의 재임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복수노조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소속회사의 대표자가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7. 소속 운수업체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산업재해로 요양한 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가해자 또는 제3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다른 법령에 따라 직접 보상 받은 경우에도 산업재해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기록 등 공신력 있는 자료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로 입증되어야 한다. 8. 부당한 승무정지는 그 기간의 절반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법원 판결문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자가 다시 신청하는 경우 면허양도일 이전의 운전경력 5. 사병으로 복무한 자의 군대 운전경력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 사람이 ---------- 5. ---------- 사람---------- ③·④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⑤ 운전경력증명발급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운전경력은 사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 등 인사관계서류와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 확실한 근거 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며, 임직원 및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운전경력증명발급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 ---------- ---------- 급여지급 관계서류---------- ---------- ---------- --- 확실한 근거에 --------- ---------- ---------- 발급해서는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한시택시사업자가 이민,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경력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조합에서 해당 운전자의 취업관리 교육실적 등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합이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⑦ 한시 택시사업자--------- ---------- ---------- ---------- ---------- ------- 경우에 한정하여 --- ---------- -.
⑧ 군용차량 및 관용차량의 운전경력이 있는 자의 운전경력에 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 병무청장 및 행정관서의 장을 운전경력증명 발급기관으로 한다.	⑧ ---------- ---------- 사람의 운전경력에 대해서---------- ---------- ----------.

⑨ 택시운수종사자의 경우 소속 회사와 해당 조합의 취업등재 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취업등재 일자를 기준으로 운전경력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습기간(상용운전자로 채용되기 이전으로 취업규칙에 의한 채용이 확인되어야 함) 및 해당 조합의 취업등재 일자를 기준으로 운전경력을 산정할 경우에는 급여지급관계서류, 배차일보, 국민건강보험지급관계서류 등 운전사실여부 확인이 가능한 근거서류를 갖춘 사람으로서 소속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운전경력을 인정한다.	⑨ 택시운수 종사자---------- ---------- ---------- ---------- ---------- --. ---------- ---------- ---------- 한다---------- ---------- 산정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 관계서류, 배차일지, 국민건강보험지급관계 서류 ---------- ---------- ---------- ---------- ----------.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회사에서 근속한 기간으로 인정하며, 근속기간은 운전공백기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하나,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⑩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회사의 분리 또는 합병으로	2. ----------

인하여 소속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소속회사----------
3. 합법적인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파업, 노동쟁의, 직장폐쇄, 불법적인 사업자의 지시 등에 따라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으로 합법적인 노사분규 등의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결정 등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3. ---------- 경우로 한정한다.
4. 수습기간(상용운전자로 채용되기 이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에 의한 채용 또는 조합에 취업등재되어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4. ---------- 이전의 기간을 말한다.)에 대해서-- 한정하여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7조(양도·양수 및 대리운전 자격요건 등) 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대리운전을 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신고하고 수리하여야 한다.	제7조(양도·양수 및 대리운전 자격요건 등) ① ---------- 하는 경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신고필증을 교	2. ---------- 경우-----

부하고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은 대리운전기간 중 보관한다.	---------- ---------- --------.
3. 대리운전자는 신고필증을 조합에 제시하고 대리운전용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교부 받아 대리운전기간 중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대리운전자의 자격증명을 반납하고 관할관청은 이를 폐기하고 해당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3. ---------- ---------- ---------- ---------- ---------- 경우---------- ---------- ---------- -------.
② 개인택시조합으로부터 임명된 조합장이 공적인 이유로 대리운전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하여 허용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및 해임은 신분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② ---------- ---------- ---------- ---------- ---------- 해임 등 ---- ---------- 경우에는 ----------.
③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상속승계 포함)·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운전경력은 시행규칙 제19조의 면허기준 완화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③ ---------- -(상속승계를 포함한다.)·대리운전--.
1. 신청·신고일부터 계산하여	1. ----------

과거 4년간 파주시 내에서 사업용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신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자	-------- 시 관할내------- --- --- --- --- --- ---
2. 신청·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7년간 관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6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신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	2. ---------- -- 7년간 시 관할 내-------- --- --- --- --- ---

[별표1]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 (제5조 관련)

구분	순위	내용	비율
택시	1순위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 관내운전경력 7년이상,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82%
	2순위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 관내운전경력 6년 이상,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3순위	면허신청일 현재 관내 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근속 중인 운전자	
	4순위	택시를 7년이상, 관내운전경력 5년이상 무사고,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5순위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 관내운전경력 5년 이상인 운전자	
	6순위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 행자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무사고 운전 영년표시장 받은운전자	
	7순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운전자	
버스 등	1순위	시내·시외또는 마을버스, 택시합산 무사고 운전경력 16년이상, 관내운전경력6년이상, 성실의무 이행한 운전자	9%
	2순위	시내·시외또는 마을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 18년이상, 관내운전경력 6년이상인 운전자	
	3순위	시내·시외또는 마을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 13년이상, 관내운전경력 5년이상, 성실의무 이행한 운전자	
	4순위	시내·시외또는 마을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 15년이상, 관내운전경력 5년이상인 운전자	
	5순위	시내·시외또는 마을버스, 택시의 합산 10년이상, 무사고 운전 영년표시장 받은운전자	
	6순위	시내·시외또는 마을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 10년이상인자, 성실의무 이행한 운전자	
	7순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운전자	
전세버스 등	1순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16년 이상 무사고, 관내 운전경력 6년이상인 운전자	4%
	2순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13년 이상 무사고, 관내 운전경력 5년이상인 운전자	
	3순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10년이상, 영년표시장 받은 운전자	
	4순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운전한자로 2회 이상 주용범죄자를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한 운전자. 다만, 중요범죄는 강력범, 조직폭력, 소매치기, 약취유인, 마약사범에 한한다.	
	5순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운전자	

유공자	1순위	택시 1순위	2%
	2순위	버스 등 1순위	
	3순위	전세버스 등 1순위	
	4순위	택시 2순위	
	5순위	버스 등 2순위	
	6순위	전세버스 등 2순위	
	7순위	택시 3순위	
	8순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운전자	
장애인	1순위	택시 1순위	2%
	2순위	버스 등 1순위	
	3순위	전세버스 등 1순위	
	4순위	택시 2순위	
	5순위	버스 등 2순위	
	6순위	전세버스 등 2순위	
	7순위	택시 3순위	
	8순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운전자	
군 관용	1순위	관용차 또는 군용차를 1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1%
	2순위	관용차 또는 군용차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3순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운전자	

※ 훈·포장 또는 표창 등의 수상자는 자기운전경력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무사고 운전경력 으로 가산한다. 다만, 표창 등의 종류가 2개 이상일때에는 신청인에게 유리한 쪽 하나만을 적용하며, 교통분야 자원봉사시간은 가산한다.

1. 훈·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등의 수상자 : 2년
2. 교통분야 국무총리표창 등의 수상자 또는 10년 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 1년 6월

3. 교통분야에서 건설교통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 경기도지방경찰청장, 경기도 지사표창 등의 수상자 또는 5년 이상 모범운전자로서 근속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1년
4. 교통분야에 대한 자원봉사자 중 파주시 자원봉사센타소장이 증명한 교통분야자원봉사시간이 300시간 도달시 무사고운전경력을 1월 가산하며 이후 매 100시간마다 1월씩 최고 6월까지 가산한다.

※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각 순위별

관내 운전경력동안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근속하여야 한다.

1. 면허신청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택시를 운전하면서 역산하여 과거 4개년 동안의 2회

이상의 택시운전자격 정지처분 없이 택시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의한 누산벌점이 3년 동안 50점 이하인 사람

2. 면허신청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시내 또는 시외버스를 운전하면서 역산하여 과거 4개년

동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별표 3 및 별표 4의 위반행위가 2회 이하 또는 과징금 총액이 300,000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표의 운전면허행정처분 기준에 의한 누산벌점이 3년 동안 50점 이하인 사람.

※ 이 표에서 택시 1순위 내용 중 “관내운전경력 7년이상”은 시행일부터 2019년까지 적용하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관내운전경력 8년이상”으로 변경하고, 2022년 이후부터는 “관내운전경력 9년 이상”으로 한다.

□ 개정이유

○ 급변하는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규정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다양한 택시민원 증가 추세

○ 개인택시면허 허가시 관내운전면허 경력기간을 순차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업종별 면허허가 배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택시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행정만족도 제고

□ 주요골자

○ 상위법령 인용조항 개정(안 제1조, 제4조)

○ 면허대수의 업종별 배분율 조정(안 제5조)

○ 운전경력산정 기준 마련(안 제6조)

○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 관내운전면허 경력기준 조정(안 별표 1)

파주시공고 제2018-1758호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지역자금의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파주시 지역화폐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역화폐 발행 및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5조)
다. 가맹점 및 운영대행사의 등록, 선정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제8조)
라.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4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1월 16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지역공동체과 지역경제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지역공동체과(우 10932)

○ 전화 : 031-940-4522 / FAX 031-940-455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파주시고시 제 2018-264 호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고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파 주 시 장

1. 회계별 예산규모

가. 회계별 총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제3회 추경	2018년 2회 추경까지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358,024,549	1,220,027,469	137,997,080	11.31
Ⅰ. 일 반 회 계	1,069,418,614	939,074,627	130,343,987	13.88
Ⅱ. 특 별 회 계	288,605,935	280,952,842	7,653,093	2.72
가. 기 타 특 별 회 계	80,787,775	77,291,624	3,496,151	4.52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733,025	1,328,425	3,404,600	256.29
○ 의 료 급 여	3,790,034	3,707,483	82,551	2.23
○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17,939	117,939	-	-
○ 공 영 개 발 사 업	2,316,649	2,316,649	-	-
○ 도 시 개 발	45	45	-	-
○ 대 지 보 상	1,003,558	1,003,558	-	-
○ 기 반 시 설	157,178	157,178	-	-
○ 교 통 사 업	3,474,756	3,474,756	-	-
○ 농어업소득지원사업	1,132,829	1,132,829	-	-
○ 폐 수 처 리 사 업	51,593,536	51,584,536	9,000	0.02
○ 폐 기 물 처 리 시 설	2,067,175	2,067,175	-	-
○ 주 차 장 관 리	10,401,051	10,401,051	-	-
나. 공 기 업 특 별 회 계	207,818,160	203,661,218	4,156,942	2.04
○ 상 수 도 사 업	103,835,456	103,764,187	71,269	0.07
○ 하 수 도 사 업	103,982,704	99,897,031	4,085,673	4.09

나. 세입예산 구조별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일반+기타특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비고
	예 산 액	구성비 (%)	예 산 액	구성비 (%)	예 산 액	구성비 (%)	
합 계	1,150,206,389	100	1,069,418,614	100.00	80,787,775	100	
지 방 세	257,773,000	22.41	257,773,000	24.10	-	-	
세 외 수 입	83,266,698	7.24	42,779,895	4.00	40,486,803	50.12	
지 방 교 부 세	169,028,152	14.70	169,028,152	15.81	-	-	
조 정 교 부 금	65,771,085	5.72	65,771,085	6.15	-	-	
국 고 보 조 금 등	257,075,911	22.35	250,182,541	23.39	6,893,370	8.53	
시·도비보조금등	85,769,839	7.46	85,670,478	8.01	99,361	0.1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31,521,704	20.13	198,213,463	18.53	33,308,241	41.23	

다. 세출예산 기능별 규모

(단위 : 천원)

분야 · 부문	합계(일반+기타특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비고
	예 산 액	구성비 (%)	예 산 액	구성비 (%)	예 산 액	구성비 (%)	
합 계	1,150,206,389	100	1,069,418,614	100	80,787,775	100	
010 일반공공행정	187,032,902	16.26	187,032,902	17.49	-	-	
020 공공질서및안전	10,044,892	0.87	10,044,892	0.94	-	-	
050 교 육	20,573,526	1.79	20,573,526	1.92	-	-	
060 문화 및 관광	52,129,577	4.53	52,129,577	4.87	-	-	
070 환 경 보 호	135,779,036	11.80	82,118,325	7.68	53,660,711	66.42	
080 사 회 복 지	371,531,553	32.30	367,733,493	34.39	3,798,060	4.70	
090 보 건	24,986,776	2.17	24,986,776	2.34	-	-	
100 농림해양수산	49,137,981	4.27	48,005,152	4.49	1,132,829	1.40	
110 산업·중소기업	10,872,791	0.95	6,139,766	0.57	4,733,025	5.86	
120 수송 및 교통	96,070,852	8.35	82,634,372	7.73	13,436,480	16.63	
140 국토및지역개발	62,525,739	5.44	59,048,309	5.52	3,477,430	4.30	
160 예 비 비	14,775,149	1.28	14,775,149	1.38	-	-	
900 기 타	114,745,615	9.98	114,196,375	10.68	549,240	0.68	

2.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가. 세 입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예산액 (A)	수정안		의결액 (A+B-C)
		증 액(B)	감 액(C)	
합 계	1,069,418,614			1,069,418,614
100 지 방 세 수 입	257,773,000			257,773,000
110 지 방 세	257,773,000			257,773,000
111 보 통 세	247,773,000			247,773,000
113 지난년도수입	10,000,000			10,000,000
200 세 외 수 입	42,779,895			42,779,895
210 경상적 세외수입	32,074,416			32,074,416
211 재산임대수입	1,307,006			1,307,006
212 사 용 료 수 입	5,014,697			5,014,697
213 수 수 료 수 입	12,091,344			12,091,344
214 사 업 수 입	2,213,827			2,213,827
215 징수교부금수입	9,931,752			9,931,752
216 이 자 수 입	1,515,790			1,515,790
220 임시적 세외수입	10,705,479			10,705,479
221 재산매각수입	200,000			200,000
222 부 담 금	4,195,980			4,195,980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1,842,400			1,842,400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예산액 (A)	수정안		의결액 (A+B-C)
		증 액(B)	감 액(C)	
224 기타수입	467,099			467,099
225 지난연도수입	4,000,000			4,000,000
300 지방교부세	169,028,152			169,028,152
310 지방교부세	169,028,152			169,028,152
311 지방교부세	169,028,152			169,028,152
400 조정교부금등	65,771,085			65,771,085
420 시·군조정교부금등	65,771,085			65,771,085
421 시·군조정교부금등	65,771,085			65,771,085
500 보조금	335,853,019			335,853,019
510 국고보조금등	250,182,541			250,182,541
511 국고보조금등	250,182,541			250,182,541
520 시·도비보조금등	85,670,478			85,670,478
521 시·도비보조금등	85,670,478			85,670,478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8,213,463			198,213,463
710 보전수입등	198,213,463			198,213,463
711 잉여금	193,288,022			193,288,022
712 전년도이월금	4,925,441			4,925,441

나. 세 출 예 산

(단위 : 천원)

분야 · 부문	시제출예산액 (A)	수 정 안		의 결 액 (A+B-C)
		증 액(B)	감 액(C)	
합 계	1,069,418,614			1,069,418,614
010 일 반 공 공 행 정	187,032,902			187,032,902
011 입법및선거관리	2,091,448			2,091,448
013 지방행정 · 재정지원	1,766,314			1,766,314
014 재 정 · 금 융	18,293,432			18,293,432
016 일 반 행 정	164,881,708			164,881,708
020 공 공 질 서 및 안 전	10,044,892			10,044,892
025 재난방재 · 민방위	10,044,892			10,044,892
050 교 육	20,573,526			20,573,526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18,918,734			18,918,734
053 평생 · 직업교육	1,654,792			1,654,792
060 문 화 및 관 광	52,129,577			52,129,577
061 문 화 예 술	17,827,430			17,827,430
062 관 광	13,625,316			13,625,316
063 체 육	14,635,116			14,635,116
064 문 화 재	6,030,130			6,030,130
065 문화및 관광일반	11,585			11,585
070 환 경 보 호	82,118,325			82,118,325
071 상하수도 · 수질	22,070,574			22,070,574
072 폐 기 물	52,138,090			52,138,090
073 대 기	5,877,908			5,877,908
074 자 연	2,031,753			2,031,753
080 사 회 복 지	367,733,493			367,733,493
081 기 초 생 활 보 장	45,431,376			45,431,376

(단위 : 천원)

분야 · 부문	시제출예산액 (A)	수정안		의결액 (A+B-C)
		증액(B)	감액(C)	
082 취약계층지원	39,385,710			39,385,710
084 보육·가족및여성	140,916,062			140,916,062
085 노인·청소년	134,453,064			134,453,064
086 노동	4,054,863			4,054,863
087 보훈	3,492,302			3,492,302
089 사회복지일반	116			116
090 보건	24,986,776			24,986,776
091 보건의료	24,053,135			24,053,135
093 식품의약안전	933,641			933,641
100 농림해양수산	48,005,152			48,005,152
101 농업·농촌	45,421,750			45,421,750
102 임업·산촌	2,583,402			2,583,402
110 산업·중소기업	6,139,766			6,139,766
111 산업금융지원	3,236,888			3,236,888
114 산업진흥·고도화	1,544,165			1,544,165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1,355,553			1,355,553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3,160			3,160
120 수송및교통	82,634,372			82,634,372
121 도로	44,823,475			44,823,475
126 대중교통·물류등기타	37,810,897			37,810,897
140 국토및지역개발	59,048,309			59,048,309
141 수자원	11,175,592			11,175,592
142 지역및도시	47,872,717			47,872,717
160 예비비	14,775,149			14,775,149
161 예비비	14,775,149			14,775,149
900 기타	114,196,375			114,196,375
901 기타	114,196,375			114,196,375

3. 기타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

【회계명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예산액 (A)	수 정 안		의 결 액 (A+B-C)
		증 액(B)	감 액(C)	
합 계	4,733,025			4,733,025
세 외 수 입	16,000			16,000
경상적세외수입	16,000			16,000
이 자 수 입	16,000			16,000
보 조 금	3,578,600			3,578,600
국 고 보 조 금 등	3,578,600			3,578,600
국고보조금등	3,578,600			3,578,6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38,425			1,138,425
보 전 수 입 등	1,138,425			1,138,425
잉 여 금	1,124,814			1,124,814
전년도이월금	13,611			13,611

나.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예산액 (A)	수 정 안		의 결 액 (A+B-C)
		증 액(B)	감 액(C)	
합 계	4,733,025			4,733,025
산 업 · 중 소 기 업	4,733,025			4,733,025
에너지및자원개발	4,733,025			4,733,025

【회계명 : 의료급여 특별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시제출예산액 (A)	수정안		의결액 (A+B-C)
		증액(B)	감액(C)	
합계	3,790,034			3,790,034
세외수입	58,500			58,500
경상적세외수입	1,500			1,500
이자수입	1,500			1,500
임시적세외수입	57,000			57,000
기타수입	32,000			32,000
지난연도수입	25,000			25,000
보조금	667,131			667,131
국고보조금등	567,770			567,770
국고보조금등	567,770			567,770
시·도비보조금등	99,361			99,361
시·도비보조금등	99,361			99,36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64,403			3,064,403
보전수입등	166,802			166,802
잉여금	166,802			166,802
내부거래	2,897,601			2,897,601
전입금	2,897,601			2,897,601

나.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시제출예산액 (A)	수정안		의결액 (A+B-C)
		증액(B)	감액(C)	
합계	3,790,034			3,790,034
사회복지	3,680,121			3,680,121
기초생활보장	3,680,121			3,680,121
기타	109,913			109,913
기타	109,913			109,913

【회계명 : 교통사업 특별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예산액 (A)	수 정 안		의 결 액 (A+B-C)
		증 액(B)	감 액(C)	
합 계	3,474,756			3,474,756
세 외 수 입	650,000			650,000
임시적세외수입	650,000			650,000
부 담 금	650,000			650,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24,756			2,824,756
보 전 수 입 등	661,305			661,305
잉 여 금	661,305			661,305
내 부 거 래	2,163,451			2,163,451
전 입 금	2,163,451			2,163,451

나.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예산액 (A)	수 정 안		의 결 액 (A+B-C)
		증 액(B)	감 액(C)	
합 계	3,474,756			3,474,756
수 송 및 교 통	3,474,756			3,474,756
대중교통·물류등기타	3,474,756			3,474,756

【회계명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시제출예산액 (A)	수정안		의결액 (A+B-C)
		증액(B)	감액(C)	
합계	51,593,536			51,593,536
세외수입	36,159,000			36,159,000
경상적세외수입	190,000			190,000
이자수입	190,000			190,000
임시적세외수입	35,969,000			35,969,000
부담금	34,539,000			34,539,000
기타수입	1,430,000			1,430,000
보조금	2,747,000			2,747,000
국고보조금등	2,747,000			2,747,000
국고보조금등	2,747,000			2,747,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687,536			12,687,536
보전수입등	12,687,536			12,687,536
잉여금	12,687,536			12,687,536

나.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시제출예산액 (A)	수정안		의결액 (A+B-C)
		증액(B)	감액(C)	
합계	51,593,536			51,593,536
환경보호	51,593,536			51,593,536
상하수도·수질	50,993,536			50,993,536
폐기물	600,000			600,000

4.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 예산총괄표

(단위 : 천원)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자 금 운 영	
수입계(A)	43,271,206	수입계(B)	60,564,250	수입계(C)	103,835,456
영업수익	42,150,647			영업수익	42,150,647
영업외수익	1,120,559			영업외수익	1,120,559
		자본잉여금수입	3,659,250	자본잉여금수입	3,659,250
		유보자금	56,905,000	유보자금	56,905,000
지출계(A′)	43,476,656	지출계(B′)	60,358,800	지출계(C′)	103,835,456
영업비용	42,959,856			영업비용	42,959,856
특별손실	16,800			특별손실	16,800
		유형자산취득	1,993,600	유형자산취득	1,993,600
		비가동설비자산취득	3,510,000	비가동설비자산취득	3,510,000
		기타자본적지출	40,366	기타자본적지출	40,366
예비비	500,000	예비비	54,814,834	예비비	55,314,834
차인(A-A′)	△205,450	차인(B-B′)	205,450	차인(C-C′)	0

5.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 예산총괄표

(단위 : 천원)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자 금 운 영	
수입계(A)	30,027,839	수입계(B)	73,954,865	수입계(C)	103,982,704
영업수익	24,397,161			영업수익	24,397,161
영업외수익	5,630,678			영업외수익	5,630,678
		자본잉여금수입	57,873,000	자본잉여금수입	57,873,000
		유보자금	16,081,865	유보자금	16,081,865
		기타자본적수입		기타자본적수입	
지출계(A′)	30,770,007	지출계(B′)	73,212,697	지출계(C′)	103,982,704
영업비용	26,925,007			영업비용	26,925,007
특별손실	2,845,000			특별손실	2,845,000
		유형자산취득	3,315,000	유형자산취득	3,315,000
		비가동설비자산취득	54,413,000	비가동설비자산취득	54,413,000
		기타자본적지출	298,100	기타자본적지출	298,100
예비비	1,000,000	예비비	15,186,597	예비비	16,186,597
차인(A-A′)	△742,168	차인(B-B′)	742,168	차인(C-C′)	0

파주시고시 제 2018-265 호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및 1차 수정예산 고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과 1차 수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파 주 시 장

1. 회계별 예산규모

가. 회계별 총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당초예산 + 1차 수정	2018년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283,591,586	1,110,047,913	173,543,673	15.63
Ⅰ. 일 반 회 계	1,043,740,172	862,021,649	181,718,523	21.08
Ⅱ. 특 별 회 계	239,851,414	248,026,264	△8,174,850	△3.30
가. 기 타 특 별 회 계	88,309,132	70,136,731	18,172,401	25.91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38,000	1,136,926	△998,926	△87.86
○ 의 료 급 여	4,089,777	3,459,780	629,997	18.21
○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07,750	107,750	-	-
○ 공 영 개 발 사 업	2,284,403	2,316,549	△32,146	△1.39
○ 도 시 개 발	-	36	△36	△100
○ 대 지 보 상	28,196	1,002,329	△974,133	△97.19
○ 기 반 시 설	158,528	157,157	1,371	0.87
○ 교 통 사 업	3,355,628	2,698,451	657,177	24.35
○ 농어업소득지원사업	1,297,773	1,262,865	34,908	2.76
○ 폐 수 처 리 사 업	60,955,400	46,497,000	14,458,400	31.10
○ 폐 기 물 처 리 시 설	2,088,372	2,060,378	27,994	1.36
○ 주 차 장 관 리	13,805,305	9,437,510	4,367,795	46.28
나.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51,542,282	177,889,533	△26,347,251	△14.81
○ 상 수 도 사 업	82,809,995	92,311,639	△9,501,644	△10.29
○ 하 수 도 사 업	68,732,287	85,577,894	△16,845,607	△19.68

나. 세입예산 구조별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일반+기타특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비고
	예 산 액	구성비 (%)	예 산 액	구성비 (%)	예 산 액	구성비 (%)	
합 계	1,132,049,304	100.00	1,043,740,172	100.00	88,309,132	100.00	
지 방 세	280,000,000	24.73	280,000,000	26.83	-	-	
세 외 수 입	99,624,959	8.80	49,165,684	4.71	50,459,275	57.14	
지 방 교 부 세	133,589,591	11.80	133,589,591	12.80	-	-	
조 정 교 부 금	60,000,000	5.30	60,000,000	5.75	-	-	
국 고 보 조 금 등	287,678,868	25.41	284,415,388	27.25	3,263,480	3.70	
시·도비보조금등	81,657,443	7.21	81,569,509	7.82	87,934	0.1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89,498,443	16.74	155,000,000	14.85	34,498,443	39.07	

다. 세출예산 기능별 규모

(단위 : 천원)

분야 · 부문	합계(일반+기타특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비고
	예 산 액	구성비 (%)	예 산 액	구성비 (%)	예 산 액	구성비 (%)	
합 계	1,132,049,304	100.00	1,043,740,172	100.00	88,309,132	100.00	
010 일반공공행정	121,254,913	10.71	121,254,913	11.62	-	-	
020 공공질서및안전	7,664,075	0.68	7,664,075	0.73	-	-	
050 교 육	26,946,598	2.38	26,946,598	2.58	-	-	
060 문화 및 관광	50,908,284	4.50	50,908,284	4.88	-	-	
070 환 경 보 호	150,177,965	13.27	87,134,193	8.35	63,043,772	71.39	
080 사 회 복 지	415,447,761	36.70	411,419,434	39.42	4,028,327	4.56	
090 보 건	17,907,193	1.58	17,907,193	1.72	-	-	
100 농림해양수산	46,886,415	4.14	45,588,642	4.37	1,297,773	1.47	
110 산업·중소기업	4,268,414	0.38	4,130,414	0.40	138,000	0.16	
120 수송 및 교통	113,396,482	10.02	96,640,560	9.26	16,755,922	18.97	
140 국토및지역개발	45,853,300	4.05	43,382,173	4.16	2,471,127	2.80	
160 예 비 비	13,477,400	1.19	13,477,400	1.29	-	-	
900 기 타	117,860,504	10.41	117,286,293	11.24	574,211	0.65	

2. 일반회계 세입 • 세출예산

가. 세 입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예산액 (A)	수정안		의결액 (A+B-C)
		증 액(B)	감 액(C)	
합 계	1,043,740,172			1,043,740,172
100 지 방 세 수 입	280,000,000			280,000,000
110 지 방 세	280,000,000			280,000,000
111 보 통 세	270,000,000			270,000,000
113 지난년도수입	10,000,000			10,000,000
200 세 외 수 입	49,165,684			49,165,684
210 경상적 세외수입	36,944,206			36,944,206
211 재산임대수입	1,640,524			1,640,524
212 사 용 료 수 입	5,767,252			5,767,252
213 수 수 료 수 입	13,654,954			13,654,954
214 사 업 수 입	2,768,976			2,768,976
215 징수교부금수입	10,703,000			10,703,000
216 이 자 수 입	2,409,500			2,409,500
220 임시적 세외수입	12,221,478			12,221,478
221 재산매각수입	200,000			200,000
222 부 담 금	4,384,602			4,384,602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2,271,120			2,271,120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예산액 (A)	수정안		의결액 (A+B-C)
		증 액(B)	감 액(C)	
224 기타수입	1,065,756			1,065,756
225 지난연도수입	4,300,000			4,300,000
300 지방교부세	133,589,591			133,589,591
310 지방교부세	133,589,591			133,589,591
311 지방교부세	133,589,591			133,589,591
400 조정교부금등	60,000,000			60,000,000
420 시·군조정교부금등	60,000,000			60,000,000
421 시·군조정교부금등	60,000,000			60,000,000
500 보조금	365,984,897			365,984,897
510 국고보조금등	284,415,388			284,415,388
511 국고보조금등	284,415,388			284,415,388
520 시·도비보조금등	81,569,509			81,569,509
521 시·도비보조금등	81,569,509			81,569,509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5,000,000			155,000,000
710 보전수입등	155,000,000			155,000,000
711 잉여금	155,000,000			155,000,000
712 전년도이월금	-			-

나. 세 출 예 산

(단위 : 천원)

분야 · 부문	시제출예산액 (A)	수 정 안		의 결 액 (A+B-C)
		증 액(B)	감 액(C)	
합 계	1,043,740,172	477,400	477,400	1,043,740,172
010 일 반 공 공 행 정	121,284,913		30,000	121,254,913
011 입법및선거관리	1,480,929			1,480,929
013 지방행정 · 재정지원	2,266,701			2,266,701
014 재 정 · 금 융	1,999,323			1,999,323
016 일 반 행 정	115,537,960		30,000	115,507,960
020 공 공 질 서 및 안 전	7,664,075			7,664,075
025 재난방재 · 민방위	7,664,075			7,664,075
050 교 육	27,183,998		237,400	26,946,598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25,386,052			25,386,052
053 평생 · 직업교육	1,797,946		237,400	1,560,546
060 문 화 및 관 광	50,918,284		10,000	50,908,284
061 문 화 예 술	17,135,576		10,000	17,125,576
062 관 광	15,469,577			15,469,577
063 체 육	14,495,116			14,495,116
064 문 화 재	3,818,015			3,818,015
065 문화및 관광일반	-			-
070 환 경 보 호	87,134,193			87,134,193
071 상하수도 · 수질	17,167,903			17,167,903
072 폐 기 물	61,195,588			61,195,588
073 대 기	6,656,794			6,656,794
074 자 연	2,113,908			2,113,908
080 사 회 복 지	411,619,434		200,000	411,419,434
081 기 초 생 활 보 장	50,874,265			50,874,265

(단위 : 천원)

분야 · 부문	시제출예산액 (A)	수정안		의결액 (A+B-C)
		증액(B)	감액(C)	
082 취약계층지원	45,972,519			45,972,519
084 보육 · 가족및여성	161,397,439			161,397,439
085 노인 · 청소년	144,790,183			144,790,183
086 노동	4,249,720		200,000	4,049,720
087 보훈	4,335,308			4,335,308
090 보건	17,907,193			17,907,193
091 보건의료	16,990,553			16,990,553
093 식품의약안전	916,640			916,640
100 농림해양수산	45,588,642			45,588,642
101 농업 · 농촌	43,116,671			43,116,671
102 임업 · 산촌	2,471,971			2,471,971
110 산업 · 중소기업	4,130,414			4,130,414
111 산업금융지원	2,101,800			2,101,800
114 산업진흥 · 고도화	1,821,124			1,821,124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207,490			207,490
120 수송및교통	96,640,560			96,640,560
121 도로	54,106,827			54,106,827
126 대중교통 · 물류등기타	42,533,733			42,533,733
140 국토및지역개발	43,382,173			43,382,173
141 수자원	5,249,640			5,249,640
142 지역및도시	38,132,533			38,132,533
160 예비비	13,000,000	477,400		13,477,400
161 예비비	13,000,000	477,400		13,477,400
900 기타	117,286,293			117,286,293
901 기타	117,286,293			117,286,293

3. 기타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

【회계명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예산액 (A)	수 정 안		의 결 액 (A+B-C)
		증 액(B)	감 액(C)	
합 계	138,000			138,000
세 외 수 입	38,000			38,000
경상적세외수입	38,000			38,000
이 자 수 입	38,000			38,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0,000			100,000
보 전 수 입 등	100,000			100,000
잉 여 금	100,000			100,000

나.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예산액 (A)	수 정 안		의 결 액 (A+B-C)
		증 액(B)	감 액(C)	
합 계	138,000			138,000
산 업 · 중 소 기 업	138,000			138,000
에너지및자원개발	138,000			138,000

【회계명 : 의료급여 특별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시제출예산액 (A)	수정안		의결액 (A+B-C)
		증액(B)	감액(C)	
합계	4,089,777			4,089,777
세외수입	58,500			58,500
경상적세외수입	1,500			1,500
이자수입	1,500			1,500
임시적세외수입	57,000			57,000
기타수입	32,000			32,000
지난연도수입	25,000			25,000
보조금	590,414			590,414
국고보조금등	502,480			502,480
국고보조금등	502,480			502,480
시·도비보조금등	87,934			87,934
시·도비보조금등	87,934			87,93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440,863			3,440,863
보전수입등	1,000			1,000
잉여금	1,000			1,000
내부거래	3,439,863			3,439,863
전입금	3,439,863			3,439,863

나.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시제출예산액 (A)	수정안		의결액 (A+B-C)
		증액(B)	감액(C)	
합계	4,089,777			4,089,777
사회복지	3,920,577			3,920,577
기초생활보장	3,920,577			3,920,577
기타	169,200			169,200
기타	169,200			169,200

【회계명 :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예산액 (A)	수 정 안		의 결 액 (A+B-C)
		증 액(B)	감 액(C)	
합 계	107,750			107,750
세 외 수 입	2,430			2,430
경상적세외수입	1,760			1,760
이 자 수 입	1,760			1,760
임시적세외수입	670			670
지난연도수입	670			67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5,320			105,320
보 전 수 입 등	105,320			105,320
잉 여 금	80,000			80,000
융자금원금수입	25,320			25,320

나.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예산액 (A)	수 정 안		의 결 액 (A+B-C)
		증 액(B)	감 액(C)	
합 계	107,750			107,750
사 회 복 지	107,750			107,750
취 약 계 층 지 원	107,750			107,750

【회계명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예산액 (A)	수 정 안		의 결 액 (A+B-C)
		증 액(B)	감 액(C)	
합 계	2,284,403			2,284,403
세 외 수 입	200			200
경상적세외수입	200			200
이 자 수 입	200			2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284,203			2,284,203
보 전 수 입 등	507,438			507,438
잉 여 금	507,438			507,438
내 부 거 래	1,776,765			1,776,765
전 입 금	1,776,765			1,776,765

나.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예산액 (A)	수 정 안		의 결 액 (A+B-C)
		증 액(B)	감 액(C)	
합 계	2,284,403			2,284,403
국토 및 지역개발	2,284,403			2,284,403
지역 및 도시	2,284,403			2,284,403

【회계명 : 대지보상 특별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예산액 (A)	수 정 안		의 결 액 (A+B-C)
		증 액(B)	감 액(C)	
합 계	28,196			28,196
세 외 수 입	196			196
경상적세외수입	196			196
이 자 수 입	196			19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000			28,000
보 전 수 입 등	28,000			28,000
잉 여 금	28,000			28,000

나.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예산액 (A)	수 정 안		의 결 액 (A+B-C)
		증 액(B)	감 액(C)	
합 계	28,196			28,196
국토 및 지역개발	28,196			28,196
지역 및 도시	28,196			28,196

【회계명 : 기반시설 특별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시제출예산액 (A)	수정안		의결액 (A+B-C)
		증액(B)	감액(C)	
합계	158,528			158,528
세외수입	2,293			2,293
경상적세외수입	2,293			2,293
이자수입	2,293			2,29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6,235			156,235
보전수입등	156,235			156,235
잉여금	156,235			156,235

나.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시제출예산액 (A)	수정안		의결액 (A+B-C)
		증액(B)	감액(C)	
합계	158,528			158,528
국토및지역개발	158,528			158,528
지역및도시	158,528			158,528

【회계명 : 교통사업 특별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예산액 (A)	수 정 안		의 결 액 (A+B-C)
		증 액(B)	감 액(C)	
합 계	3,355,628			3,355,628
세 외 수 입	700,000			700,000
임시적세외수입	700,000			700,000
부 담 금	700,000			700,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655,628			2,655,628
보 전 수 입 등	656,305			656,305
잉 여 금	656,305			656,305
내 부 거 래	1,999,323			1,999,323
전 입 금	1,999,323			1,999,323

나.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예산액 (A)	수 정 안		의 결 액 (A+B-C)
		증 액(B)	감 액(C)	
합 계	3,355,628			3,355,628
수 송 및 교 통	3,355,628			3,355,628
대중교통·물류등기타	3,355,628			3,355,628

【회계명 :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시제출예산액 (A)	수정안		의결액 (A+B-C)
		증액(B)	감액(C)	
합계	1,297,773			1,297,773
세외수입	234,440			234,440
경상적세외수입	18,740			18,740
이자수입	18,740			18,740
임시적세외수입	215,700			215,700
지난연도수입	215,700			215,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63,333			1,063,333
보전수입등	1,063,333			1,063,333
잉여금	900,000			900,000
융자금원금수입	163,333			163,333

나.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시제출예산액 (A)	수정안		의결액 (A+B-C)
		증액(B)	감액(C)	
합계	1,297,773			1,297,773
농림해양수산	1,297,773			1,297,773
농업·농촌	1,297,773			1,297,773

【회계명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예산액 (A)	수 정 안		의 결 액 (A+B-C)
		증 액(B)	감 액(C)	
합 계	60,955,400			60,955,400
세 외 수 입	45,397,235			45,397,235
경상적세외수입	181,500			181,500
이 자 수 입	181,500			181,500
임시적세외수입	45,215,735			45,215,735
부 담 금	45,215,735			45,215,735
기 타 수 입	-			-
보 조 금	2,761,000			2,761,000
국고보조금등	2,761,000			2,761,000
국고보조금등	2,761,000			2,76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797,165			12,797,165
보전수입등	12,797,165			12,797,165
잉 여 금	12,797,165			12,797,165

나.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예산액 (A)	수 정 안		의 결 액 (A+B-C)
		증 액(B)	감 액(C)	
합 계	60,955,400			60,955,400
환 경 보 호	60,955,400			60,955,400
상하수도·수질	60,955,400			60,955,400
폐 기 물	60,955,400			60,955,400

【회계명 :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시제출예산액 (A)	수정안		의결액 (A+B-C)
		증액(B)	감액(C)	
합계	2,088,372			2,088,372
세외수입	20,676			20,676
경상적세외수입	20,676			20,676
이자수입	20,676			20,67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67,696			2,067,696
보전수입등	2,067,696			2,067,696
잉여금	2,067,696			2,067,696

나.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시제출예산액 (A)	수정안		의결액 (A+B-C)
		증액(B)	감액(C)	
합계	2,088,372			2,088,372
환경보호	2,088,372			2,088,372
폐기물	2,088,372			2,088,372

【회계명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예산액 (A)	수 정 안		의 결 액 (A+B-C)
		증 액(B)	감 액(C)	
합 계	13,805,305			13,805,305
세 외 수 입	4,005,305			4,005,305
경상적세외수입	1,953,865			1,953,865
재산임대수입	112,195			112,195
사 용 료 수 입	804,000			804,000
사 업 수 입	1,001,170			1,001,170
이 자 수 입	36,500			36,500
임시적세외수입	2,051,440			2,051,440
과징금및과태료	1,400,000			1,400,000
기 타 수 입	1,440			1,440
지난연도수입	650,000			650,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800,000			9,800,000
보 전 수 입 등	6,400,000			6,400,000
잉 여 금	6,400,000			6,400,000
내 부 거 래	3,400,000			3,400,000
전 입 금	3,400,000			3,400,000

나.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예산액 (A)	수 정 안		의 결 액 (A+B-C)
		증 액(B)	감 액(C)	
합 계	13,805,305			13,805,305
수 송 및 교 통	13,400,294			13,400,294
대중교통·물류등기타	13,400,294			13,400,294
기 타	405,011			405,011
기 타	405,011			405,011

4.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 예산총괄표

(단위 : 천원)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자 금 운 영	
수입계(A)	47,240,695	수입계(B)	35,569,300	수입계(C)	82,809,995
영업수익	46,155,608			영업수익	46,155,608
영업외수익	1,085,087			영업외수익	1,085,087
		자본잉여금수입	3,059,300	자본잉여금수입	3,059,300
		유보자금	32,510,000	유보자금	32,510,000
지출계(A')	43,793,915	지출계(B')	39,016,080	지출계(C')	82,809,995
영업비용	43,283,915			영업비용	43,283,915
특별손실	10,000			특별손실	10,000
		유형자산취득	1,668,600	유형자산취득	1,668,600
		비가동설비자산취득	8,600,000	비가동설비자산취득	8,600,000
		기타자본적지출	30,000	기타자본적지출	30,000
예비비	500,000	예비비	28,717,480	예비비	29,217,480
차인(A-A')	3,446,780	차인(B-B')	△3,446,780	차인(C-C')	0

5.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 예산총괄표

(단위 : 천원)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자 금 운 영	
수입계(A)	28,528,968	수입계(B)	40,203,319	수입계(C)	68,732,287
영업수익	25,379,966			영업수익	25,379,966
영업외수익	3,149,002			영업외수익	3,149,002
		자본잉여금수입	35,186,319	자본잉여금수입	35,186,319
		유보자금	5,017,000	유보자금	5,017,000
		기타자본적수입		기타자본적수입	
지출계(A′)	29,120,968	지출계(B′)	39,611,319	지출계(C′)	68,732,287
영업비용	27,940,968			영업비용	27,940,968
특별손실	180,000			특별손실	180,000
		유형자산취득	2,650,000	유형자산취득	2,650,000
		비가동설비자산취득	29,816,319	비가동설비자산취득	29,816,319
		기타자본적지출	0	기타자본적지출	0
예비비	1,000,000	예비비	7,145,000	예비비	8,145,000
차인(A-A′)	△592,000	차인(B-B′)	592,000	차인(C-C′)	0

파주시 고시 제2018 - 266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2. 28.

파주시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광탄천로 477 외 4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토지정보과(☎940-489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12.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파주시고시 제2018-268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파 주 시 장

1. 고 시 일 : 2018년 12월 28일
2. 고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붙임 참조
4. 도로구간 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주민 의견 수렴 공고	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14일 이상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 얻은 날로부터 (동의 생략 포함) ⇒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 심의 결과 . 내용 및 절차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동의 만료일부터 ⇒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결과 통보

※ 도로명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031-940-489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구간 변경 조서 1부. 끝.

파주시 공고 제2018-1760호

공 고

파주시 공인조례 제7조(공인의 신조·개각) 및 동조례 제10조(공고), 제12조(공인의 폐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인명	신조사유	사용관리부서 (관수자)	신조일	비고
파주시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인	재정안정화 기금신설	정 : 기획예산과장 부 : 예산팀장	2019. 1. 1.	
파주시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인	재정안정화 기금신설	정 : 기획예산과장 부 : 예산팀장	2019. 1. 1.	
파주시지역발전과분임물품출납원인	조직개편	정 : 지역발전과장 부 : 개발총괄팀장	2019. 1. 1.	
파주시지역발전과일상경비출납원인	조직개편	정 : 지역발전과장 부 : 개발총괄팀장	2019. 1. 1.	

공인명	폐기사유	사용관리부서 (관수자)	폐기일	비고
파주시균형발전과분임물품출납원인	조직개편	정 : 균형발전과장 부 : 개발총괄팀장	2019. 1. 1.	
파주시균형발전과일상경비출납원인	조직개편	정 : 균형발전과장 부 : 개발총괄팀장	2019. 1. 1.	

2018년 12월 28일

파 주 시 장

공 인 의 모 형

1. 공인신조명 : 파주시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인 등 4개
   공인폐기명 : 파주시균형발전과분임물품출납원인 등 2개

2. 공인 신조(폐기)사유 : 재정안정화기금 신설 및 부서 명칭변경

3. 공인의 사용일 : 2019. 1. 1.

4. 신조 공인명 및 인영

신 조 공 인			관리부서
공 인 명	인 영	규 격(cm)	
파주시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인		1.8 × 1.8	기획예산과
파주시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인		1.8 × 1.8	기획예산과
파주시지역발전과분임물품출납원인		1.8 × 1.8	지역발전과
파주시지역발전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 × 1.8	지역발전과

5. 폐기 공인명 및 인영

폐 기 공 인			관리부서
공 인 명	인 영	규 격	
파주시균형발전과분임물품출납원인		1.8 × 1.8	균형발전과
파주시균형발전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 × 1.8	균형발전과